V.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V. 대한제국의 종말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은 1904년 2월 韓日議定書 체결 직후부터 시작되어 강제적인 '보호조약' 체결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보호조약'은 외교권 박탈조약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의 해외공관들은 모두 폐쇄되고 한국주재 외국공관들도 속속 철수함으로써 공식적인 외교교섭의 통로는 봉쇄되었다. 더구나 1906년 1월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가 내정 전반에까지 점차 통치권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고종은 적극적으로 해외에 密使들을 파견하여 일제의 주권침탈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밀사파견 외교를 전개하였다.

밀사외교의 첫번째 대상은 러시아였다. 고종은 러일전쟁의 와중에도 러시아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었다. 거기에는 光武年間 황제의 측근친위세력으로 활약했던 참모들의 영향도 컸다. 한일의정서 체결 직후 上海로 망명한 李學均·玄尙健 등은2) 전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A. Pavlov)와 접촉하면서, '러시아가 조만간 일본을 격퇴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니 잠시 시기를 기다리라'는 내용의 密書를 고종에게 보내왔다.3) 이들은 또 1905년 2월에 또

^{1) &#}x27;保護條約' 이후 大韓帝國의 대내외적 주권상실의 과정에 대해서는 徐榮姬, 〈일 제의 한국 保護國化와 統監府의 통치권 수립과정〉(《韓國文化》18, 서울대 한국 문화연구소, 1996) 참조.

²⁾ 이학균·현상건 등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는 徐榮姫, 〈러일전쟁기 대한제국 집 권세력의 시국대응〉(《역사와현실》25, 1997) 참조.

^{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3(影印本, 國史編纂委員會, 1992), No. 42 및 No. 52, 83·88等.

다른 측근세력 중 한 명인 李寅榮 측에도 밀서를 보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열장에 호소하여 그 간섭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李容翊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상주받은 고종은비밀리에 그 대책을 논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궁내부 대신 李載克과 이용익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기술한 國書 5통을 작성해 상해의 이학균 등에게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歐美에 가지고 가게 할 계획을 세웠다는 첩보가 있었다.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외교고문 스티븐스(D. Stevens)는 즉각 고종을 알현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궁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뿐이라고 협박하였다.4) 그러나 3월 하순 상해에서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진주한 일본군의 폭압과 내정간섭을 고발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가 발견되었다.5) 또한 1905년 4월경 종친 李載現이 주러한국공사 李範晉과 러시아군 참령 金仁洙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皇帝의 卦書'가 언급되는 등,6) 고종과 측근참모들은 러일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리라 전망하면서 여러 차례 러시아에 지원을 호소하였다.7)

그러나 1905년 9월 포츠머스조약으로 러시아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保護·指導·監理'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정치적·군사적 간섭 능력을 상실하였다. 더구나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간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1907년 7월에는 제1차 러일협상이 체결되었다.8) 러시아는 1884년 처음 한반도에 진출한 이래 청과 일본

幣原坦,《日露間之韓國》(博文館, 1905), 164\.

⁴⁾ 金正明,《日韓外交資料集成》5(巖南堂書店, 1967), 1905년 2월 11일, 406쪽.

^{5) 《}日韓外交資料集成》5, 1905년 3월 5일, 422쪽;3월 26일, 423쪽;3월 28일, 425~426쪽;4월 1일, 437쪽 및《日本外交文書》38-2, 1905년 3월 19일·3월 21일, 407~408쪽 등의 자료를 종합해볼 때,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고종의 親書는 총 120자 정도로, 고종황제의 自署와 印章이 찍혀있는 것이었다.

^{6)《}日韓外交資料集成》5, 1905년 4월 26일, 453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23, No. 423, 1905년 5월 15일, 407~408쪽.

⁷⁾ 현재 모스크바 帝政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보관중인 1905년 1월 10일 자 고종의 親書에서도 고종은 하루빨리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여 일본 의 압제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⁸⁾ 이창훈, 〈러일전쟁후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과 한국의 대응(1905~1910)〉(한국 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 2, 집문당, 1995) 참조.

의 간섭으로부터 주권을 지켜보려는 고종에게 큰 기대를 가졌고, 삼국간섭과 아관파천을 통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일시 저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소 극적인 對韓政策으로 일관하면서 고종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고종은 미국에 대해서도 한일의정서 체결 직후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親書를 여러 차례 보냈다. 1904년말에는 주미한국공사관 고문이자 콜롬비아대학 총장인 니담(Charles W. Needham)을 통해 미국무장관에게 밀서를 전달하고, 미국정부가 현존 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의 독립유지에 진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니담은 국무장관으로부터 동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회답을 보내왔다.9) 이 시기 미국의 對韓政策의 기조로 볼 때10) '同情'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의문이나, 이후 고종은 미국의 주선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1905년 7월에는 러일간의 강화담판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자는 취지로 이승만을 밀사로 선정하였다.¹¹⁾ 이승만은 독립협회운동 당시 급진공화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으나, 선교사들의 배려로 1904년 8월 특별사면을 받고 11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당시 정부대신 중 미국과 가까웠던 민영환과 한규설은 이승만에게 미국정부요로에 한국의 독립보전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고, 이승만은 주한미국공사였던 딘스모어(H. A. Dinsmore)의 주선으로 1905년 1월 상순에서 2월 사이에 미국무장관 헤이(John Hay)를 면담한 바 있었다.¹²⁾ 이때 다시 이승만을 강화담판 밀사로 선정했던 것은 러일간의 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잘 교섭해 보라는 지시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8월 4일 하와이 교민 8,000명을 대표해서 미국에 온 목사 윤병구와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

^{9) 《}日韓外交資料集成》 5, 1905년 6월 12일・14일, 491~492쪽.

¹⁰⁾ 러일전쟁기 미국의 對韓政策, 특히 루즈벨트의 친일적 동아시아 정책과 對韓 방침에 대해서는 金基正, 〈1901~1905年間의 美國의 對韓政策 研究〉1(《東方 學志》66, 1990) 참조.

^{11) 《}日韓外交資料集成》 5, 1905년 7월 14일・19일, 507~511쪽.

¹²⁾ 고정휴, 〈독립운동기 이승만의 외교 노선과 제국주의〉(《역사비평》31, 1995) 참조.

담하고 한국의 주권과 독립보전에 대한 청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인 주미 한국대리공사 김윤정이 한국정부의 공식 훈령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면서 이들의 對美교섭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³⁾ 물론 미국이 이미 태프트-가츠라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승인한 상태였으므로 이승만 등의 루즈벨트 면담이 특별한 결과를 낳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승만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러일강화조약이 일본의 한국보호권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고종은 미국인 헐버트(Homer B. Hulbert)를 1905년 10월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 친서를 전달했다. 1882년 朝美條約 제1조의 '居中調整'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이 나서서 한일의정서를 파기하고 열강의 공동보호를통해 일본의 침략을 견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일제의 강압으로 '保護條約'이 체결된 직후인 11월 26일에는 헐버트에게 勒約은 무효라는 긴급 전문을 보냈고, 주프랑스공사 閔泳讚에게도 밀명을 내려 12월 11일 미국무장관 루트를면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루트는 '한국은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와 8월의顧問協約 체결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 상태가 되었으므로 미국은 어떠한협조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전 주한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도고종으로부터 운동자금 1만불과 황제의 어새가 압인된 백지 친서 등을 전달받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벌였으나 미국은 고종의 호소를 모두 묵살하였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친일적이었기 때문이다.14)

미국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한 고종은 다시 세계 열강을 상대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고 열강의 한국문제 개입을 호소하는 비밀외교를 전개하였다. 런던 트리뷴지 기자인 스토리(Douglus Story)에게 의뢰하여 북경주재영국 공사에게 전송한 1906년 1월 29일자 國書에서 고종은 5년간 열강의 공동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헐버트에게도 1906년 6월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이태리·벨기에·중국 등 9개국 국가원수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문제를 제소할 뜻을 전달하도

¹³⁾ 고정휴, 위의 글, 131~139쪽.

¹⁴⁾ 金基奭, 〈光武帝의 主權守護 外交(1905~1907): 乙巳勒約 無效宣言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참조.

록 밀지를 내렸으나 친서는 각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5)

한편 고종의 최측근인 이용익은 1905년 9월 상해로 망명한 후16) 직접 유럽을 거쳐 러시아를 방문하고 한국문제에 개입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파리·베를린을 경유하여 11월 하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이용익은 주러한국공사 李範晉과 함께 외무대신 람스도르프(Lamsdorf) 등을 수 차례 면담하였다. 이용익은 러시아측에 한국 이권을 주는 대신 보호를 요청한다는 고종의 啓字공문을 제시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미 러일강화조약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한 이후였고, 또한 제1차 볼세비키혁명의 와중이어서 한국문제에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이용익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1906년 3월 상해에 귀환한 후,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국내의 고종과 연락하면서, 세계 각국에 밀사들을 파견하여 일본의 강압실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으나, 1907년 2월 급작스럽게 사망하고말았다.17)

그런데 이때 이용익은 고종으로부터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은 우선 러시아 황제니콜라이 2세에게 이용익을 파견하여, 그를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수석 전권으로 임명했음을 알리고 러시아측 협조를 얻게 하려 했던 것이다. 18) 그러나 이용익이 급작스럽게 사망해버리자 다시 李相高·李僑 등을 헤이그밀사로 선정하였다. 19) 이상설 등은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러시아에 도착한 후 주러공사 이범진의 아들로서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는 李瑋宗과 합류하여 헤이그회의에 참석하였다. 20) 이상설 등이 가지고 간

¹⁵⁾ 위의 글, 246~260쪽.

^{16) 《}日本外交文書》 38-1, 1905년 9월 4일, 922~926쪽.

¹⁷⁾ 상해 망명 이후 이용익의 행적에 대해서는 日本外務省편,〈韓國人李容翊來朝並同人擧動取調一件〉(《極秘 日本의 韓國侵略史料叢書》14, 한국출판문화원) 참조.

¹⁸⁾ 위의 책, 458~461쪽.

¹⁹⁾ 헤이그밀사에 대해서는 윤병석,《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 1990), 353~363쪽 및 日本外務省,〈韓國において第2回萬國平和會0議へ密使派遣並び同國皇帝の譲位び日韓協約締結一件〉(《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37・38, 高麗書林) 참조.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8, No. 99, 1907년 3월 1일.

고종의 친서는 '일본이 1905년 11월 18일 勒約 이후 우리 나라에 가한 모욕과 기만에 대해 심히 민망하던 차에 海牙에서 平和會議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전 의정부參贊 이상설과 平理院 판사 이준, 駐露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위원으로 특파하여 일본의 불법행위를 각국 위원에게 알리고자 하니, 세계가모두 한국의 고난을 알고 公法에 의거하여 公議로써 다시 한국의 국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格外의 派員임을 용서하고 짜르가 해아의 러시아 委員에게 칙명을 내려 한국위원들을 도와서 회의석상에서한번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21) 고종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러시아측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세계여론에 호소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종은 한일의정서 체결 직후부터 1907년 강제로 퇴위되기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밀사외교를 전개하였다. 해외로 망명한 측근 천위세력들은 물론이요, 친한파 외국인들도 밀사로 파견하였다. 광무년간 宮內府 內藏院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원과 오래전부터 홍콩·상해 등지의외국계 은행에 예치해오던 고종의 秘資金이 그 자금줄 역할을 하였다. 22) 러시아와 미국을 향해 끊임없이 한국문제에 개입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보호조약 이후에는 열강의 공동보호를 요청하면서까지 세계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고심하였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提訴라는 법률적 차원의 해결도 모색하였다. '保護條約'은 강압에 의한 것이고, 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法理的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과 측근 참모들의 밀사외교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기본적으로 萬國公法的 인식에 의거한 이러한 외교활동은 당시의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결여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188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萬國公法》·《公法會通》등 서양의 국제법 저서들은 이 땅의 지식인들이 기존의 華夷論的 세계관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시대의 국제질서에 대해 인

²¹⁾ 모스크바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이 친서는 1907년 4월 20일자이고, 고종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²²⁾ 고종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徐榮姬, 《光武政權의 국정운영과 日帝의 국권침탈 에 대한 대응》(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8), 189~194쪽 참조.

식하게 하였으나, 한편으로 그것을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맹신하고 오해하게 한 문제점도 있었다. 고종과 그 측근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만국공법류의 인식에 의거하여 끝까지 국제여론에 대한 호소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일제의 주권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²³⁾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고종은 밀사외교 활동을 펴는 한편으로 대내적으로도 일제의 주권침탈에 대항하였다. 1906년 2월 일제 통감부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광무년간 강화된 황제권의 실현기구였던 궁내부를 중심으로²⁴⁾ 통치권 회복을 시도하였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 초기 기존의 顧問機構를 통한 시정감독 방식으로 의정부를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었을 뿐, 宮內府의 권력행사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다. 황제측의 반발로 황실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정리에도 착수하지 못했으며, 의정부 관리에 대한 고종의 영향력도 건재하여 '위로는 정부대신으로부터 군수 이하에 이르기까지 궁중에서 황제가 친재하는 상황'이라고 일본측은 반발하고 있었다.²⁵⁾

재정상으로도 의정부와 별도로 궁내부가 정세관을 파견하여 각종 잡세를 징수하고 궁내부 훈령으로 영업특허를 부여하는 등 광무년간 이래의 관행이 계속되었다. 1906년 7월 함흥 明太洞 금광채굴권의 부여와 啓字納稅證 발행, 9월 제주도 해초 매수독점권 부여 사건, 10월 충남 안면도 田土개간권과 연해 각 포구 養魚・捕魚・염업특허권 허락도 그러한 예였다.26) 궁내부는 여전히 의정부 각부의 행정에 간여하거나 의정부를 무시하고 직접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 以外의 정부', 혹은 '정부 以上의 정부'로서의 위상을 유지

²³⁾ 金容九、〈西洋國際法理論의 朝鮮傳來에 관한 小考〉1(《泰東古典研究》10, 1993). 姜相圭、〈高宗의 對外認識과 外交政策〉(《韓國史 市民講座》19, 一潮閣, 1996).

²⁴⁾ 광무년간 황제권 강화와 궁내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徐榮姫, 〈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韓國史論》23, 서울大, 1990) 참조.

²⁵⁾ 徐榮姬, 앞의 책, 278쪽.

^{26) 《}統監府來文》의정부편, 11책(奎17849, 1906~1910), 1906년 5월 29일·7월 11 일·9월 1일·10월 23일.

하고 있었다.27)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궁내부는 통감부·이사청과 협의없이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산채굴권 등을 부여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1906년 9월 궁내부가 인천소재 영국교회에 궁내부 소속 대지를 대여하면서 일본 理事官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것, 11월 이태리 광업회사가 궁내부에 갑산광산 채굴권을 신청한 사건, 1907년 2월 프랑스인이 평안북도 구성·선천·초산·회천광산 채굴권을 신청한 사건, 6월 청국인이 궁내부 경리원으로부터 평안북도 의주 외 9군의 檀木벌채 수출권을 획득한 사건 등으로 궁내부는 통감부와 큰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28) '보호조약'으로 일본 통감부가 한국의 모든 외교사무 및 외국인과의 계약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여전히 궁내부에 각종 특허를 신청하고 있었다.

또한 1906년 1월 外部 폐지 이후 남은 업무는 의정부 外事局이 담당하게 되었으나 중요한 대외관계 문서나 조약 원본들은 대부분 궁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통감부에서는 모든 외교문서와 조약 원본을 외사국으로 옮겨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²⁹⁾ 궁내부에서는 모두 궁중 화재시에 분실했다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종은 조카인趙南昇을 통해 중요 외교문서들을 프랑스인 주교 뮈텔(Mutel)의 성당에 맡겨보관하고 있었다.〈朝日修好條規〉등 각국과의 통상조약 문서, 해외파견 외교관에 대한 임명장, 경인철도 부설 계약문서 등 공식적인 외교문서 외에도고종이 이태리 황제에게 '局外中立'을 성명한 親書, 한일의정서 이후 러시아·프랑스·독일 황제 등에게 국권회복을 청원한 친서, 러일전쟁중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와 密勅 등 총 87건의 문서를 몰래 감취두고 있었던 것이다³⁰⁾

^{27)《}韓國施政年報》1(統監府, 1906~1907), 63~64\.

^{28) 《}統監府來文》, 1906년 9월 30일 · 11월 6일 ; 1907년 2월 25일 · 6월 3일.

^{29) 《}統監府來文》, 1906년 4월 21일・5월 5일.

^{30) 1910}년 6월 고종의 매부인 趙鼎九의 장남 조남승은 고종의 밀명으로 미국인 헐버트에게 고종이 상해의 독일계 은행에 예치한 비자금을 인출해 달라는 신임 장을 전달한 혐의로 일본 경시청의 취조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는 조 남승이 감추고 있던 대외관계 비밀문서들을 찾아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No. 93~95, 188~192쪽).

한편 고종은 일제에 의해 성립된 친일내각을 불신임하는 방법으로 정국의불안을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주권회복을 시도하였다. 당시 박제순참정이 이끄는 친일내각은 '보호조약' 반대 운동자들의 시위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박제순은 조약체결 당시 책임이 큰 외부대신이었다는 점에서각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오직 일본 주차군과 헌병대의 무력으로 겨우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세가와(長谷川好道)가 이끄는 일본 주차군과 헌병대는 친일내각 반대상소를 올린 지방유생들을 무차별 체포하고,31) 의병의 배후 혹은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閔炯植・閔丙漢・閔京植・李鳳來 등대관들을 무시로 체포하는 등 살벌한 계엄상태를 연출하고 있었다.32)

1906년 3월 2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임한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토는 만주문제와 러일전쟁 전후처리 등 일본의 국내 사정 때문에 부임한지 얼마 안된 4월 21일 귀국하여 6월 23일에 복귀하는 등 자주 일본을 방문하였고,³³⁾ 한번 귀국하면 몇 개월씩 체류하는 것이 예사였다. 이토 부재중에는 하세가와 주차군사령관이 통감을 대리하였으나, 고종은 통감 부재기간을 이용하여 친일내각을 붕괴시킬 공작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고종은 이토가 부재중인 5월 28일 황태자 결혼식 거행을 빌미로 독단으로 議政에 閔泳奎를 임명했다.34) 그밖에 몇몇 친일대신들도 경질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보고를 일본에서 들은 이토는 고종에게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대신을 경질하지 않고 國政은 大小를 불문하고 통감에게 電問하겠다고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35) 귀임한 이토는 7월 2일 고종을 알현하고 자신의 부재중 각지에서 치성한 의병봉기와 내각동요에 대해 고종의 책임을 힐난하였다. 헌병대에 붙잡힌 金升旼이라는 儒生에게서 압수한 문서를 들이대면서 궁중이 의병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종이 자신을 '統監'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侯爵'이라고 부르는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3, No. 658, 1905년 12월 11일, 534쪽.

^{3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 No. 164·162, 1906년 6월 18일.

^{33)《}伊藤博文傳》下(春畝公追頌會, 1940), 714\.

^{34) 《}詔勅》(규장각 자료총서 근대법령편), 1906년 5월 28일, 463쪽.

^{3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 No. 140 · 211, 1906년 5월 29일 · 30일.

것은 통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서인지 묻는 등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고 종을 추궁하였다. 그리고 궁중과 상해·블라디보스톡 등지간의 密使왕래와 비밀電文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宮禁肅淸을 요구하였다.36)

이토의 강요에 못이겨 고종은 7월 3일 詔勅〈궁궐을 肅淸하는 건〉을 발표했다. 비록 實職이 있는 관리라도 公事가 아니면 함부로 궁궐에 출입할 수없고, 실직이 없는 자는 大臣 역임자라도 황제의 召命없이는 궁궐을 출입할수 없다는 내용이었다.37) 이어서 7월 6일에는〈宮禁令〉이 발포되어 궁궐에 출입할 때는 누구나 門票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등38) 일제는 고종과 측근참모들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토는 11월 21일 또 다시 귀국하여 1907년 3월 20일에야 귀임하였다. 이토가 없는 동안《大韓每日申報》에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가 게재되는 등 고종의 주권회복 시도는 계속되었다. 39) 박제순내각의 일부도 경질되었다. 11월 25일 통감대리 하세가와 주차군사령관을 방문한박제순은 농상공부대신 權重顯을 군부대신에, 경기도관찰사 成岐運을 농상공부대신에, 궁내부특진관 沈相薰을 侍從武官長에 임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하세가와는 통감 부재시 대신 경질은 불가하다고 반대하였지만, 40) 박제순은통감이 부득이한 경우 2, 3대신의 경질은 일임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인사는황제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11) 물론 박제순의 강변은 고종을 엄호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법부대신이하영과 학부대신 이완용 등 친일대신들은 통감 부재중 황제가 언제라도자신들을 숙청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전궁궁할 수밖에 없었다. 42) 실제로 고종은 한일의정서 체결에 협조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서훈까지 받은 친일과이근택을 중추원의장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보호조약'에 반대하여

^{36)《}伊藤博文傳》下, 718\.

^{37)《}韓末近代法令資料集》5(국회도서관, 1971), 1쪽.

^{38) 《}韓末近代法令資料集》 5.3~4쪽.

^{39)《}伊藤博文傳》下, 726~744\.

^{40)《}駐韓日本公使館記錄》26, No. 311, 1906년 11월 26일, 397~398쪽.

^{4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8, No. 12, 1906년 11월 27일, 31~33쪽.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7, No. 5, 1906년 12월 1일, 統監府 제1회 報告, 9~10쪽.

유형에 처해졌던 한규설을 임명하는 등⁴³⁾ 친일대신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친일대신들의 현저한 동요에 불안을 느낀 하세가와는 고종을 알현하고, 이토통감이 일본에서 귀국하면 사태를 타개할 특단의 수단을 강구해올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고종의 저항으로 권력이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정개선'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황제는 앞으로 政務에 간여하지 말고 宮中과 府中을 구별하여 정부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위임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궁중사무도 궁내부대신이 專管케 하고, 황제는 御命으로 법률·칙령을 발포하는 외에 기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말라고 강요하였다. 이어서 열린 대신회의에서 하세가와는 이러한 사항을 詔勅으로 발표하자고 발의하고 12월 13일자로 이를 발표하였다.44) 궁중과 부중을 구별하여 관리들이 그 직무권한을 다하게 하고, 1895년 〈宗廟誓告〉의 정신대로 참정이 의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신들을 통솔하며, 궁중숙청에 힘쓰겠다는 내용이었다.45) 일제가 갑오개혁 당시부터 집요하게 추구해온 황제권의 축소와 내각에의 권력 이양을 다시 한번 강조한 조칙이었다.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계속되는 고종의 주권회복 시도로 실제적인 내정장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일제는 1907년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으로 對韓政策을 再考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각부 顧問들을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온 통감부의 통치방식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대한 자강회·서북학회 등 계몽운동단체들과《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등이 주도하고 있는 친일내각 공격의 여론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지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排日主義가 고취되어 한때 기승을 부리던 친일단체 일

^{43) 《}詔勅》、光武 10년 11월 17일 및 12월 18일, 476・480쪽.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 No. 315, 1906년 12월 23일, 400쪽.

^{45) 《}詔勅》, 光武 10년 12월 13일, 479쪽.

진회의 기세도 한풀 꺾인 정황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후원 외에는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박제순내각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⁴⁶⁾

박제순은 결국 5월 초순 사직을 결심하였다. 이토는 일단 일진회와의 제휴를 권유했으나 박제순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진회가 박제순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토는 차제에 유약한 박제순내각을 경질하여 황제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친일내각을 결성하기로 결심하고, 1907년 5월 22일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하였다. 47) 일제가 이완용을 발탁한데는 '보호조약' 체결 당시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과 더불어 일찍부터 황제폐위를 주장해온 것이 크게 고려되었다.

이완용은 1906년 12월 박제순에게 고종황제를 그대로 두면 정부대신의 빈번한 경질로 결국 친일내각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내각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고 통감부의 힘으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황제가 싫어하고 분노해도 내각이 일치협력하여 황제권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또한 일본측도 황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이완용은 하세가와 주차군사령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황제의 성격을 고칠수 없으니 마지막 수단은 한국역사에서 그 實例를 볼 수 있는 '廢位'밖에 없다고 건의하였다. 게다가 이런 일을 공공연한 방법으로 일본측과상의하면 여론의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자신을 포함한 3, 4명의 동지가 단행해서 조금도 일본측에 누를 끼치지 않겠으니, 다만 이면에서 동의만 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폐위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세가와는 일단 '당신들이 실행해도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고 세계여론이 주목할 것'이라면서난색을 표명하였으나49) 이 일로 이완용은 일본측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되었다.

⁴⁶⁾ 日本外務省編、〈統監府政況報告並雜報〉(《極秘日本の韓國侵略史料叢書》18, 1988), 341~388等.

^{47)《}日本外交文書》40-1, No. 581, 韓國內閣更決始末, 556~560쪽,

^{4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7, No. 8, 1906년 12월 20일, 統監府 제2회 報告, 18~22쪽

^{4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7, No. 7, 1906년 12월 14일, 長谷川戶道 謁見始末 및 別紙 甲・乙과 附屬書,12~18等.

참정으로 발탁된 이완용은 자신의 내각은 時務에 통하고 '韓日提携'를 현 실로 인정하는 사람, '施政改善'에 열심인 사람, 어떤 곤란을 만나도 그 목적 을 달성하기까지 중도하차하지 않고 비록 황제의 의사라도 능히 반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내부대신 任善準, 군부대신 李 秉武, 학부대신 李載崑 등을 추천하였다. 이토는 5월 22일 오후 4시 고종을 알현하고 한일관계 진전과 '시정개선' 추진에 적당한 인물이라면서 이완용을 참정에 추천하였다. 고종은 나이와 경력, 일반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토는 일반의 여론은 하등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 면서 지금까지 고종이 행한 모든 배일주의적 행동, 즉 미국인 헐버트를 밀사 로 파견한 것, 《트리뷴》지 기자 스토리에게 '보호조약'을 부정하는 친서를 보 도하게 한 행위 등은 모두 조약위반 사항이라고 몰아붙였다. 이토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고종은 결국 오후 7시반 이완용을 불러 내각조직을 하명하였다. 이완용은 기존의 정부대신 중 이지용 ㆍ권중현 ㆍ성기운의 사표만을 수리하려 했으나.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부대신 이하영도 사의를 고집함으로써 후임 으로 고영희와 조중응을 추천하였다. 나아가 고종과 여론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진회의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에 발탁하였다. 이완용은 고종에게 종래의 내각이 황제에 의해 임명된 것이라면, 신내각은 처음부터 일본에 의 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제도 지금까지와 같은 은밀한 배일주의를 버리 고 완전히 한일제휴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알현할 때마다 반복 하여 그 점을 상주하겠다고 협박하였다.50)

이렇게 성립된 이완용내각은 친일파로 지목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어느정도 지위가 있었던 이지용·이하영·권중현·성기운·민영기 등 重臣 大官들 마저 모두 퇴각하고, 이완용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형태였다. 오랜 일본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개화정객 조중웅이 일약 법부대신에 임명된 것도 파격이었다. 무엇보다도 송병준의 입각으로 친일단체 일진회의 지원을 받게됨으로써 이전 박제순내각에 비하면 안정적 출발을 하는 셈이었다. 이토로서는 송병준을 내각에 발탁하여 일진회의 지지를

^{50)《}日本外交文書》40-1, No. 581 韓國內閣更迭始末, 556~560\.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강력한 친일내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이완용 내각의 성립으로 일제는 자신들의 의도를 아무런 여과없이 통과시킬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적극적 폐위론자인 이완용과 송병준을 앞세워 황제권에 적극 대항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이었다.

실제로 일제는 이완용내각이 출범하자마자 그간 통감부 통치에 저항해오 던 황제권을 본격적으로 무력화 해가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토는 5월 30일 신내각 전원과 통감부 관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내각과 통감이 1 개월에 적어도 2, 3회 만나 시정을 논의할 것이니 각료들은 개별적으로 황제를 만나거나 단독으로 上奏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부득이하게 각료가 황제를 알현할 때는 반드시 參政大臣 이완용을 동반해야 하고, 황제가 설혹 개별적으로 召見하더라도 이를 준열히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종과 정부대신들의 접촉 자체를 제한하여 황제의 정무간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였다.51)

더 나아가 6월 14일에는 일제가 그 동안 오랜 숙제로 여겨왔으나 황제권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했던〈內閣官制〉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52)일본의 내각관제를 모델로 한 신관제에서 내각總理大臣은 명실공히 정부수반으로서 내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 각부를 통할하면서 필요한 경우 閣令을 발포하거나 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시키는 勅裁를 청할수 있고(제4조・제5조), 군부대신이 軍機・軍令에 관해 상주할 때는 미리 보고받는 권리(제8조) 등을 확보하여 이전의 의정부참정에 비해 대폭 권한을 강화하였다.53)그간 황제권이 궁내부 기구를 중심으로 완강히 저항하며 통감부통치를 무력화시켜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단 내각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황제권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고종은 이토와 이완용내각에 대한 불만으로 이완용이 궁중에 들어와도 병을 칭하고 만나주지 않거나 매일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잠겨 있었다.54) 그러

^{51) 《}日本外交文書》 40-1, 1907년 5월 30일, 韓國新內閣大臣ニ對スル伊藤統監ノ演述, $561\sim565$ 쪽.

^{52)《}韓末近代法令資料集》5,522~528쪽.

^{53) 《}韓末近代法令資料集》 5, 1907년 6월 14일 칙령 35호, 524~525쪽.

⁵⁴⁾ 黑龍會編,《日韓合邦秘史》上(1930; 原書房, 1966), 271 等.

면서도 일본에 망명중인 박영효에게 밀지를 내려 급거 귀국시키는 등 이토와 이완용내각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55)

그러나 7월 2일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종황제의 운명도 마지막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제폐위를 단행하기 위해 고종을 무섭게 몰아붙였다. 7월 3일 이토는 마침 인천항에 입항한 일본 해군중장 일행을 대동하고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일본에 대항하려면 공공연한 방법으로 하라고 힐난하였다. 7월 6일 어전회의에서 송병준은 고종이 스스로 일본 천황에게 가서 사과하든지 아니면 大漢門 앞에서 하세가와 사령관에게 사죄하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핍박하였다.56) 이토는 본국정부에 보낸 전보에서, 황제의 밀사파견은한국이 일본에 대해 공공연히 적의를 표현한 조약위반 사실이므로 일본은한국에 선전포고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일본정부가 취할 방책에 대해 원로대신들이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총리대신 이완용과는 이미 고종의 양위 문제를 거론하였음도 보고하였다.57)

일본정부는 7월 10일 원로대신회의를 열고 이토통감의 청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번 기회에 한국 내정의 전권을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내각대신 이하 중요 관헌의 임명에 통감이동의할 권리,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내각대신 이하 중요 관헌에 임명할 권리 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때 閣議에 제출된 對韓처리요강의 최초안은첫째 한국 황제로 하여금 大權에 속하는 內治 政務의 실행을 통감에게 위임하게 할 것, 둘째 한국정부로 하여금 내정에 관한 중요 사항은 모두 통감의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하고, 또 시정개선에 대해 통감의 지도를 받겠다고 약속하게 할 것, 셋째 군부대신·탁지부대신은 일본인으로 임명할 것 등이었다. 또한 제2안으로 첫째 한국 황제가 황태자에게 양위하여 장래의 화근을두절케 할 것, 둘째 본건의 실행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실행케 함이 得策이

⁵⁵⁾ 徐榮姬, 앞의 책, 300쪽.

^{56)《}日韓合邦秘史》, 282쪽.

^{57) 《}日韓外交資料集成》6中,特別機密 57호,密使海牙派遣ニ關シ韓國皇帝へ嚴重警告並對韓政策ニ關スル廟議決定方稟請ノ件,581~582等.

며, 국왕과 정부는 통감의 副署없이는 정무를 실행할 수 없게 하여 통감이 副王 혹은 攝政의 권리를 가지게 할 것, 셋째 한국정부의 중요 各部에 일본 정부가 파견한 관료가 대신 혹은 차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것 등이 제출되었다. 토론과정에서 한국 황제가 일본 천황에게 양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한국 황태자에게 양위하는 안에 대해서도 다수가 반대했으나 육군대신 테라우치(寺內正毅)가 적극 주장하여 요강안에 반영시켰다. 顧問제도를 폐지하고 통감부는 幕僚 기능에 한정시키며 나머지 기구는 모두 한국 정부조직에 합병한다는 통감부 기구개편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방침의 실행은 한국 황제가 결정하는데 맡기지 않고 양국 정부간 협약의 형태로 추진하되 황제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즉시 병합을 단행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원로들이 동의하였다.58)

이처럼 일본정부의 對韓정책이 강경기조로 치닫고 있을 때 일본 재야의對外便論者들도 한국병합을 부르짖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頭山滿 등 黑龍會 인사들이 일본의회에 제출한 對韓政策 의견이나, 大同구락부・猶 興會・同志記者구락부・憲政本黨外交調查會・日韓同志會 등이 제출한 의견서들은 대부분 對韓 강경론의 입장에서 적어도 영국의 인도정책, 프랑스의 안남정책과 같은 것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한국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실정을 조사하고 유약한 이토통감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59)

일본정부가 이러한 對韓 강경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외무대신 하야시를 직접 파견한 가운데 한국 내각에서는 이완용과 송병준이 앞장서서 황제폐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측이 정권의 위임이나 합병을 요구하기 전에 황제가 알아서 양위로써 사죄하는 것만이 한국이 살길이라는 주장이었다. 7월 16일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마침내 황제폐립을 결정하고 이완용이 입궐해 고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고종은 "짐은 죽어도 양위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오히려 박영효를 궁내부대신으로 임명했다. 박영효가 나서서 이 위기를 타개

^{58) 《}日本外交文書》40-1, No. 474, 1907년 7월 12일, 韓帝ノ密使派遣ニ關聯シ廟 議決定ノ對韓處理方針通報ノ件、附記 1・2・3, 455~456等.

^{59) 《}日本外交文書》40-1, No. 485, 1907년 7월 19일, 林外相渡韓後ノ本邦輿論硬化 ニ關スル件, 460~464\.

해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토의 재촉을 받은 송병준이 수백 명의 일진회원들을 동원해 궁궐을 에워싸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사태는 점점 고종에게 불리해져 갔다. 7월 18일 이완용의 집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송병준은 황제가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도장을 찍게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옥새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우선 황태자 대리를실행하기 위해 代理의 조칙안과 讓位의 조칙안 두 가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오후 5시 입궐하여 이토의 고종 알현이 끝난 후 어전에 나아가양위를 상주했다. 고종은 단연코 거절하면서 궁내부대신 박영효를 불러오라하였으나 그는 병을 칭하고 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고종은 새벽 5시에이르러 비로소 황태자 대리의 조칙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60이이날 重明殿에서의 알현에 대신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권총을 품에 숨기고 들어갔다.황제도 황태자를 비롯한 다수의 宮內官들과 侍臣들을 불러 배석케 하였으나송병준이 이들을 모두 물리쳤다. 뿐만 아니라 법부대신 조중응이 궁중과 외부 연락이 가능한 전화선들을 모두 절단한 후 양위를 압박했던 것이다.61이

그리고 7월 19일자로 마침내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다.62) 고종은 어디까지나 황태자 대리를 선언한 것이지 양위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제는 7월 20일 오전 9시 서둘러 양위식을 거행하였다. 대한제국의 마지막황제인 純宗(李坧)의 즉위였다. 中和殿에서 거행된 양위식은 신구황제가 직접참석하지 않고 내관이 이를 대신하는 權停例로 치러졌다.63) 일제는 서둘러세계 각국에 이를 알리고 고종의 퇴위를 기정사실화 하였다.64)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수 천명이 모여 일본인들을 공격하는 폭동사태가 연출되었다. 이완용의 집이 불 태워지고 통감이 저격 목표가 되는 등 폭동이 계속되자 정부대신들은 신변

^{60)《}日韓合邦秘史》上, 297~309쪽.

⁶¹⁾ 戶叶薫雄・楢崎觀一,《朝鮮最近史 附韓國倂合誌》(蓬山堂, 1912), 112~113쪽.

^{62) 《}日本外交文書》40-1, No. 486, 1907년 7월 19일, 韓帝讓位ノ經緯及右詔勅發布ニ關スル件, 465~466等.

⁶³⁾ 李泰鎭, 〈통감부의 대한제국 實印탈취와 순종황제 서명위조〉(《일본의 대한제 국 강점》, 까치, 1995), 122~126쪽.

^{64) 《}日韓外交資料集成》6中, 1907년 7월 20일, 韓國皇帝讓位顚末通報ノ件, 614쪽.

의 위협 때문에 통감 관저에 가까운 송병준의 집을 임시 내각회의 장소로 사용할 정도였다.⁽⁵⁾ 대한자강회·동우회·기독교청년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시위군중 2천여 명은 종로에 모여 연설회를 개최한 후 일진회 기관신문인 국민신보사를 습격하고, 또 일부는 경운궁 대한문 앞 십자로에 수백명이 꿇어앉아 황제에게 결코 양위하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중들의 시위를 일제는 경찰과 주차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특히 侍衛隊 제2연대 제3대대가 박영효 등과 연계하여 양위반대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명분으로 주차군 보병 제51연대 1개 대대를 7월 19일 밤 돌연 경운궁에 입궐시켜 왕궁의 일부를 점령하였다. 또한 서대문 밖에 있던 포병 제17연대 1개 중대는 야포 6문을 이끌고 입성하여 남산 倭城臺 상에 포열을 갖추고 서울시내를 감시하였다. 서울시내에주둔하고 있던 한국군들이 서로 기맥을 통해 저항에 나설 것에 대비한 조처였다. 기관포 2문을 가진 일본군대가 軍部 화약고를 점령하고 용산의 육군화약고도 접수하여 탄약 보급을 차단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였다.66) 이처럼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한 일제의 제압으로 양위반대 시위는 점차 수그러들고 말았다.

고종은 1880년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이래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기까지 언제나 정국의 중심에 서있었다.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개화파 정권의 성립, 독립협회운동 등 민권운동세력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끊임없는 정변·쿠데타·폐위음모 등 왕조시대 전통적인 왕권의위상은 상실하였으나 1897년 大韓帝國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光武年間에는 측근 친위세력을 양성하여 강력한 황제권을 구사해왔다. 특히 宮內府를 중심으로 추진한 光武改革은 부국강병한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상주의적 식산흥업정책이었다. 물론 자체 능력의 한계와 국제정세의악화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67) 1903년 이후 러일간의 전쟁위기가

^{65)《}日韓合邦秘史》上, 312~319쪽.

⁶⁶⁾ 戶叶薰雄・楢崎觀一, 앞의 책, 116~123쪽.

⁶⁷⁾ 徐榮姬, 〈광무정권의 형성과 개혁정책 추진〉(《역사와 현실》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참조.

점증하자 고종은 우선 러일 양국 사이에서 '戰時中立'을 선언함으로써 주권을 지켜보려 하였고, '보호조약'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주권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그것이 자신의 폐위를 앞당긴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제 일제의 주권침탈에 저항하는 마지막 구심점이던 고종이 강제로 퇴위됨으로써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은 목전의 일로 한발 더 다가오고 있었다.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일제는 고종의 퇴위를 단행한 후 그 여세를 몰아 7월 24일에는 제3차 한 일협약(韓日新協約; 丁未條約)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서울의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일본 혼성1여단 병력이 급파되고, 외무대신 하야시가 서울에 도착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측 요구는 별다른 수정없이 가결되었다. 조약체결 사실은 바로 다음날《官報》號外를 통해 공표되고, 각국주재 일본대표들을 통해 열강에도 통보되었다.1)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指導를 받는다.

제2조 한국정부는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傭聘할 수 없다.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은 폐지한다(統監府編,《韓國條約類纂》, 1908, 25~28쪽).

즉 신협약으로 일제는 '시정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권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간여를 공식화하였다. 물론 그동안에도 '시정개선'이라는

金正明 편,《日韓外交資料集成》6中(巖南堂書店, 1967), 1907년 7월 25일, 韓國皇帝讓位後ノ紛紜締略落著及ビ日韓協約調印ノ件, 639~640等.
《統監府來文》의정부편, 11책(奎17849, 1906~1910), 1907년 7월 24일.

명목으로 사실상의 내정간섭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 '보호조약'에 의거한 통감의 임무는 한국의 외교권만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 이후 통감은 실제로 각부 고문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더라도 형식상 한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이러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한계를 느낀 일제는 이제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한 승인권, 고등관리 임면에 대한 동의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내정의 최고 감독권자가 되었다. 또한 1904년 고문협약의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일본인을 직접 한국관리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조언이나 권고 수준에서 나아가 직접 행정실무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기틀를 마련하였다. 애초에 이토가 생각한 對韓 요구사항에는 한국 황제가 詔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통감의 자문을 받게 한다는 항목까지 있었으나, 이는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신협약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조약체결 당시 이토와 이완용간에 교환된 이면각서에 있었다. 각서에서는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大審院・控訴院・지방재판소・區재판소)를 신설하고(제1조), 간수장 이하 반수를 일본인으로 하는 감옥을 설치하며(제2조), 황궁 수비를 위한 육군 1대대 외 모든 군대를 해산할 것 등이 약속되었다(제3조).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강제기구들인 감옥・군대・재판소 등을 일제가 장악함으로써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해체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그간 顧問 또는 參與官 명의로 한국정부에 용빙된 사람들은 모두 해고하고(제4조) 대신 중앙 및 지방관리에 직접일본인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제5조). 구체적으로 각부 次官, 內部 경무국장, 警務使 또는 副警務使, 內閣 書記官 및 書記郞 중 약간명, 각부 서기관및 서기랑 중 약간명, 각도 事務官 1명, 각도 경무관, 각도 主事 중 약간명과재무, 경무 및 기술관련 관리 등이 그 대상이었다.》 중앙 각부의 차관, 내각서기관 등을 일본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중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장악하게 하고 내부 경무국장 임명을 통해 치안권을 확보하며, 각 지방의 일선

^{2)《}日韓外交資料集成》6中,1907년 7월 24일,日本ノ對韓要求ニ關シ統監ノ意見報告ノ件,624~625等.

^{3)《}日韓外交資料集成》6中,日韓協約規定實行ニ關スル覺書案ノ件,627~629쪽.

對民 행정분야에까지 공식적으로 일본인을 진출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07년 8월 2일 경무고문 丸山重俊이 경시총감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8월 8일 궁내부차관 鶴原定吉(전 통감부 총무장관), 내부차관 木內重四郎(전 통감부 농상공부총장), 학부차관 俵孫一(전 통감부 서기관)이임명되고, 8월 13일 내부 경무국장에 松井茂가 임명되었으며, 8월 15일에는각도 사무관 및 경시, 9월 7일 탁지부차관 荒井賢太郎(前 재정고문부 소속), 9월 19일 농상공부차관 岡喜七郎, 법부차관 倉富勇三郎 등이 임명되었다.4) 이들은 대부분 통감부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그간 고문직으로 간접적으로 한국정부에 참여하다가 직접 한국 내각에 들어서게 된 경우였다.

일본인들이 직접 한국정부에 진출함으로써, 통감부의 입장에서는 그간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던 '한국정부 집행-통감부·고문부의 감독'이라는 이중구조가 필요없게 되었다. '시정개선'사업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오던 財政顧問部는 폐지되어 탁지부 재무감독국에 귀속되었고, 顧問경찰의 폐지로 각도 警務顧問支部 보좌관은 각도 警視에, 나머지 경무고문부 직원들은 경부, 순사로 임용되는 등 다수의 일본경찰이 한국정부에 임용되어 내부 경무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5) 이미 일제가 한국의 치안경찰권을 모두 장악한 마당에 여러 종의 경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한국경찰과 고문경찰, 통감부·이사청 경찰의 3종이 모두 통일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의 정부조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하였다. 먼저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신관제의 발포로 경리원 등 궁내부 소속 다수의 院司를 폐지하고 관리도 대폭 감축하는 한편 일본인을 궁내부 수뇌에 배치하였다.6) 궁내관 중에서 폐관 또는 퇴관된 사람은 1908년 상반기말까지 칙임관 이하 166인, 하급 役員 2천 400여 명, 궁중제사관 300여 명 등이었다.7) 또한 메가타(目賀田種太郎) 재정고문이 부임 당시부터 추진하였으나 황제측의 심한 반발로 완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황실재산 정리도 본격

^{4)《}韓國施政年報》1(統監府), 49~50\.

^{5)《}韓國施政年報》1,110~112\·116~117\.

^{6)《}韓國施政年報》1,49~50零.

^{7)《}韓國施政年報》1,69~80쪽 및 2,12쪽.

적으로 시작되었다.8) 일제에 대한 저항의 물적·인적기반이었던 궁내부와 황실재산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1908년 1월 각부 신관제 실시 이후 일본인 관리의 임명은 더욱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종래 고문·보좌관·참여관 혹은 그 부속원으로서 한국정부에 용빙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한 직에 한국정부 관리로 임명되었다.9 1908년 6월 현재 대한제국 정부관료 5,096명 중 일본인은 1,797명이고 통감부 소속의 일본인 관료는 4,403명이었다. 1908년 12월말 현재 2,080명의 한국정부 소속 일본인 관리의 배치상황을 보면, 탁지부가 962명(46.3%)로 가장 많고 법부가 393명(18.9%), 내부 373명(17.9%)의 순서였다.10 탁지부의 경우 1909년말이면 일본인 관리 수가 한국인보다 많을 정도로 급속도로 일제에 의해 장악되었다.

₹	1>	통감부시기	대하제구	과류의	구전	미	이워	혀화('	1909녀만	여재)
\ 1	1/	ラロエババ		7 4		~	1 1 1 7	7761	レンしンティラ	27/11/

관원		칙·주임관		판약]관	합	총계	
부명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5/1
궁 내	부	18	165	31	226	49	391	440
내	각	6	42	8	38	14	80	94
내	부	107	350	470	844	577	1,194	1,771
탁 지	부	142	76	1,180	860	1,322	936	2,258
학	부	28	27	137	386	165	413	578
농상공부		58	14	214	109	272	123	395
합	계	359	674	2,040	2,463	2,399	3,137	5,536

^{*} 출전: 水田直昌,《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47쪽.

한편 이처럼 일본인들이 한국 내각에 직접 진입함에 따라 통감부 조직은 대폭 축소되었다. 일본인들이 직접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⁸⁾ 李相燦. 〈일제침략과 황실재산 정리〉(《奎章閣》15. 1992) 참조.

^{9)《}統監府時代の財政》, 46~47쪽. 《內部去來案》권 1(奎17768, 내각 외사국편), 1907년 9월 11일, 일본인관리임용 에 관한 내규.

^{10)《}韓國施政年報》2, 18쪽 및 3, 35쪽.

한국정부와 통감부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조직을 간소화하였다. 통감부는 이제 집행기능을 대폭 할애한 幕僚機構가 되었다. 1907년 9월 9일 칙령 295호〈統監府 및 理事廳 官制〉개정의 내용을 보면 일단 통감의 職權은 확장되었다. 통감은 한국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및 법령에 기초하여 제반 정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제3조) 외교업무 대행 이외에 한국의일반 내정까지 관장하는 한국 국정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이전에도 실제로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한국 황제권의 반발로 명문화되지 못했으나, 이제 법적·공식적으로도 명실상부한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감부 관리 수는 副統監의 신설(제10조 2항) 외에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총무장관 1명, 참여관 專任 2명(감사부장·외무부장), 비서관 2명, 서기관 6명, 기사 4명, 통역관 9명, 屬·技手·通譯生 43명 등이 전부였다. 警視 및警部는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각부의 일본인 차관 9명을참여관 자격으로 통감부에 소속시키고, 또 한국 내각에 진출한 일본인 관리들이 실제로 통감의 지휘를 받게되므로 통감부는 변함없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11)

1907년 10월 9일에는 통감부 훈령 21호〈統監府事務分掌規程〉의 개정으로 총무부·경무부·농상공부를 폐지한 대신 통감관방과 감사부·지방부를 신설하고 관방장관에 총무장관, 각 부장에는 총무장관 혹은 專任 참여관을 임명하였다. 통감관방에는 문서·인사·회계과를 두고, 외무부 각 분과는 폐합하여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이민에 관한 사항, 조약 및 取極書에관한 사항, 儀式 및 敍勳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監査部는 통감부 법령과 함께 한국정부 제정의 제 법령 및 처분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부에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殖産 및 금융에 관한 사항, 종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사법 및 경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12)

이러한 통감부 개정관제의 특징은 통감부가 집행기능을 축소하고 한국 내 각의 통치행정을 감독하는 상위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점이었다. 종래 통감부와 대한제국의 정부조직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또 고문부가 중간에

^{11)《}統監府法令集》上,449~451쪽.

^{12)《}統監府法令集》上,461~463\.

개재해있던 병렬적 구조에서 고문부가 해체되고 통감부와 고문부의 일본인 관리들이 직접 한국 내각에 진입함으로써 통감부의 집행기구적 측면은 최소 화되고 한국정부를 감독하는 상위기구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통감은 여전히 통감 관저에서 한국정부 대신들을 소집하여 시정개선협의회를 계속하되 실행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감부 총무장관 및 각 참여관과 한국정부 각부의 일본인 차관들을 參與官會議에 소집하여 직접 집행을지휘하였다.13) 특히 통감이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에 동의·승인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한제국정부가 칙령·법률을 제정하려면 먼저 내각 또는 각부의 초안을 내각회의에서 논의한 후 황제에게 결재를 禀請하는 문안을 만들어 통감부에 넘기고, 통감의 승인이 나면 황제에게 상주하여 칙재를 받아 반포할 수 있었다. 閣令·部令은 법률·칙령의 범위 안에서 내각총리대신 및각부 대신이 통감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공포하였다.14) 이로써 대한제국의황제권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통감이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신협약 체결 당시 미발표 각서 제3조에서 계획한 대로 일제는 7월 31일 밤 순종으로부터 군대해산의 조칙을 얻어냈다. 재정부족과 軍制 쇄신을 이유로 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대한제국의 마지막 보루까지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고종의 강제퇴위 당시 일부 시위대 병사들이 양위 반대파인 박영효 등과 함께 저항계획을 세웠던 것도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광무년간 고종은 꾸준히 군비증강에 힘써 왔는데, 이러한 군비증강사업은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황제의 친위세력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추

^{13)《}韓國施政年報》1, 11~12\.

^{14) 《}統別原案》(奎17854-1)・《統別法律關係往復文》(奎17852) 등 참조.

전된 것이었다. 1898년 6월 육해군 친총을 천명한 고종은 육군 증설과 해군 定制에 관한 조칙을 잇달아 내리고 친위 각대 편제를 개정하였으며, 1898년 7월에는 武官學敎를 창설하고 1899년 6월에는 元帥府를 설치하였다.1) 신무기·군함의 도입에도 막대한 비용을 썼을 뿐 아니라2) 1903년 3월에는 징병제 실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3)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제는 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하고 군사적 공수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합법화하였다. 한국 주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함과 동시에 고문협약으로 군부고문 野津鎭武를 파견하여 갖가지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군비를 축소하였다. 1904년 5월 일제가 파악하기로 실병력수 16,000여 명에서 1905년 4월과 1907년 4월 2단계에 걸쳐 대대적인 감축을 실시한 결과 해산 당시 한국군은 시위보병 2개 연대 약 3,600명, 기병·포병·공병·치중병 약 400인, 지방군대 8개 대대(수원·청주·대구·광주·원주·해주·안주·북청 8개소) 약 4,800억, 도합 8,800여 명에 불과하였다.4)

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의 지휘 아래 치밀한 해산계획을 세운일제는 8월 1일 이른 아침 중앙군인 시위대 해산부터 시작하였다. 훈련원 주위에 일본 군대를 배치하여 완벽한 전투준비를 갖춘 가운데 오전 7시 군부대신 李秉武가 일본군 사령관 관저인 大觀亭에 시위대 각 대장들을 소집하고 해산 조칙을 전달하였다. 8시까지 각 대원들을 훈련원에 소집하면 10시에 해산식을 거행한다는 선고였다. 소집 부대 중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제2연대 제1대대는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오지 않았다. 나머지 부대에서는 군인들의 군모와 견장을 회수하고, 下土에게 80원, 병사 중 1년 이상자에게 50원, 1년 미만자에게 25원의 은사금을 지급한 후 바로 귀향명령을 내렸다. 돌연한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역사와현실》19, 1996) 참조

²⁾ 광무년간 군부예산은 1897년에서 1900년 사이에 전체 세출 예산의 25%를 차지하였고 1901년 이후에는 40%에 육박하였다(李潤相,《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55쪽).

^{3)《}詔勅》, 314~315쪽.

⁴⁾ 徐仁漢, 《大韓帝國 軍事制度 研究》(國民大 博士學位論文, 1996), 216~226\.

해산명령에 군인들은 비분강개하였으나 이미 무장이 해제된 채 일본군대의 총검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일부 해산병들과 장교는 서로 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비탄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산식에 참가하지않은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은 무장한 상태로 병영을 이탈하여 서울시내 곳곳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장 참령 朴性煥이 군대해산에 반대하여 자결한 모습을보고 격분한 병사들은 병영내에 있던 일본인 교관에 대한 총격을 시작으로인근의 제2연대 병사들과 합세하여 남대문 부근에서 일본군과 맹렬한 총격전을 벌이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5)이 날 훈련원 해산식에 참가한 인원은제1연대 제2대대 575인,제1연대 제3대대 488인,제2연대 제3대대 405인,기병대 88인,포병대 106인,공병대 150인 총계 1,812인에 불과하였다.제2연대제2대대는 궁궐호위를 위해 근위대로 개칭하여 존속시켰으므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절반에 가까운 병사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해산에 응하지 않고저항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나머지 잔존부대인 旅團司令部・硏成學校・헌병대・치중대・홍릉수비대・군악대는 8월 28일 해산되었다.6)

시위대 해산을 마친 일제는 각 지방 진위대에 대해서도 해산작업을 시작하였다. 8월 1일부로 각 지방 진위대 대대장이 배속된 일본군 교관과 함께 군부에 출두하여 해산지시를 받고, 각 대대 인근의 일본군 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병사를 무장해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8월 3일 개성·청주를 시작으로 9월 3일 북청 진위대까지 약 1개월에 걸친 해산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8월 6일 강원도 원주 진위대의 저항을 시작으로 강화도 분견대의 무장봉기, 충주·제천 등 각지 진위대의 저항이 이어졌다. 진압에 나선 일본군의 사상자도 68인에 이르렀으며 해산 진위대군을 포함 한국측 피해는 1,850명으로 집계되었다.7)

이러한 지방 진위대의 저항은 8월 이후부터 전국적인 의병봉기의 열기로 연결되면서, 의병의 구성성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서울에서 해산된

⁵⁾ 黑龍會編,《日韓合邦秘史》上(1930; 原書房, 1966), 335~337\.

⁶⁾ 戶叶薰雄·楢崎觀一, 《朝鮮最近史 附韓國倂合誌》(1912), 155쪽.

⁷⁾ 위의 책, 165~170쪽.

시위대 병사나 각 지방 진위대 해산 군인들이 경기도·강원도·충청도·호남 일대로 내려가면서 의병부대에 합류하여》기존의 유생 의병장 중심의 의병 대오는 평민 주도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閔肯鎬·池弘允·延期羽 등이 대표적인 군인 출신 의병장이었으며, 해산군인들의 참여로실제적인 전투력과 기동성을 갖춘 의병들은 1908년 가장 격렬한 전투를 치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09년 하반기에 일본군의 대대적인 남한대토벌 작전으로 궤멸되기 시작한 의병대오는 점차 만주 등지로 이전하여 독립군으로 전환되었다.9)

군대해산 이후 친위보병 1대대, 기병 1중대와 무관학교 업무만을 관장하며 명목만 유지해오던 軍部도 1909년 7월 30일 칙령 제68호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남은 병력은 신설된 궁중 親衛府에 부속되었으나, 친위부의 감독은 고문으로 배치된 일본장교들이 담당하였고, 병기·탄약 관리 및 처분은 한국주차일본군 사령관이, 軍人·軍屬의 범죄에 대한 사법처분은 주차일본군 군법회의가 맡게 되었다. 또한 폐지된 무관학교의 생도들은 전원 일본에 유학시켜사관양성을 위탁함으로써 병합 이전에 실질적인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해체되었다.10)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일제는 신협약 제3조에서 사법사무는 보통행정과 구별한다는 것으로 사법 권 탈취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일제는 이전에도 이미 법부고문·참여관· 보좌관의 배치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사무에 광범하게 관여해 오고 있었다. 일제는 한국의 재판제도가 한성재판소 및 平理院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 방재판소에 전담 재판관 없이 관찰사·목사 등이 겸직해온 현실을 비판하면 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각 재판소에 일본인 보좌관 등을 배치하여

⁸⁾ 洪淳權,《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261~265等。

^{9)《}韓國施政年報》2,55~58\.

^{10)《}韓國施政年報》3,27~35\.

한국의 사법권을 침탈해왔다.11)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협약 부속 각서에서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大審院・控訴院・지방재판소・區재판소)를 신설하고, 간수장 이하 반수를 일본인으로 하는 감옥을 설치할 것을 약속받은 일제는 이제 사법권의 완전 장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1907년 12월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 제9호同시행법, 제10호 재판소설치법 공포로 일본과 같은 3심제를 채택한 일제는 大審院 1(서울), 控訴院 3(서울・평양・대구), 지방재판소 8(서울・공주・함흥・평양・해주・대구・진주・광주), 區재판소 113(한성부 1・경기도 12・강원도 8・충청남도 12・충청북도 6・함경남도 5・함경북도 3・평안남도 7・평안북도 7・황해도 8・경상북도 14・경상남도 10・전라남도 11・전라북도 9)개소를 설치하고, 典獄을일본인으로 하는 감옥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정상의 이유로 한꺼번에 모든 재판소를 신설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일제는 1차로 1908년 1월 대심원, 공소원과 서울 외 7개 지방재판소, 서울 외 15개 구재판소를 개청하고, 1909년 1월에는 2차로 인천 외 7개 지방재판소 지부와 개성 외 23개구재판소를 개청하였다.12)

뿐만 아니라 1908년 3월부터 대심원장, 검사총장, 서울공소원장 및 검사장, 서울지방재판소장 및 검사장, 서기 6인에 일본인을 용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다수의 일본인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경찰권과 함께 통치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강제기구인 사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1908년 새로 임용된 법관 내역을 보면 일본인은 판사가 74명, 검사 32명, 재판소 서기장 4명, 번역관 4명, 서기 90명, 飜譯官補 9명이 임용된 데 비해 한국인은 판사 36인, 검사 9인, 서기 4인이 임용된 데 불과하였다.13)

또한 장차 병합 이후 한국에 대한 법률적 지배에 대비하여 구래의 한국법에 대한 조사와 그 개정작업도 시작하였다. 1908년 1월부터 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및 기타 부속법령의 立案 및 그 재료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말부터는 민법편찬 재료수집을 위해 한국 각지의 慣習에 대한 조사가 이루

^{11)《}韓國施政年報》1,91~92零.

^{12) 《}日韓外交資料集成》8, 保護及び倂合錄編, 170~174쪽.

^{13)《}韓國施政年報》1,97쪽.

어졌다. 그 결과 1908년 7월《刑法大全》을 개정하고, 민·형사 소송규칙 및 기타 제 법률에 대한 개정 및 신설 법령이 발표되었다.14)

이처럼 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준비를 마친 일제는 마지막 단계로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모두 일본정부에 위탁한다는 소위〈己酉覺書〉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 1.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정부는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한다.
- 2.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 3. 재한국 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한국인 에 대해서 한국법규를 적용하다.
- 4. 한국 지방관청 및 公吏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사무에 대한 재한국 일본 해당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 5. 일본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 5조로 이루어진 각서의 내용에 따라, 10월 법부가 폐지되고 그 사무는 신설된 통감부 사법청으로 이관되었다. 칙령 제236호 통감부재판소령, 제243호 통감부 감옥관제를 발포한 일제는 통감부 사법청 산하에 고등법원 1 개소, 공소원 3개소, 지방재판소 8개소, 동 지부 9개소, 구재판소 80개소를 설치하고 일본인 판사 192명, 검사 57명, 통역관 기타 246명 총 495명과 한국인 판사 88명, 검사 7명, 기타 215인 총 310명을 채용하였다. 15) 그러나 한국인 법관은 민사재판은 원고·피고 모두 한국인인 경우,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적용법규에 있어서 일본제국 법규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법규 및 관습을 적용한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사람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일본 법규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16)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병합 이전부터이미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14)《}韓國施政年報》2,43~45쪽.

¹⁵⁾ 戶叶薰雄・楢崎觀一, 앞의 책, 199~210쪽.

^{16)《}韓國施政年報》3,47~48\.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一進會는 오랜 일본 유랑생활에서 돌아온 宋秉畯이 1904년 8월 前독립협회원 尹始炳・尹吉炳・兪鶴柱・廉仲模 등과 함께 결성한 維新會와 9월 李容九가 전국의 舊동학교도들을 결집시켜 창립한 진보회가 결합되어 탄생하였다. 진보회가 처음에 지방 각지에서 대단한 형세를 보이며 성장하자, 대중적기반을 가지지 못한 채 일본 주차군의 보호하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송병준 등은 이용구를 매수하여 일진회를 창립한 것이다. 송병준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 당시 구로다(黑田淸隆)대사가 파견되었을 때 接伴使 隨員으로인연을 맺어 이래 일본에 건너가 인삼재배, 직물염색 등을 공부하였고,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 小將의 군사통역으로 귀국하였다. 1894년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이용구는 1899년 최시형 사망 이후 북한지방 선교에 종사하다가 역시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교세회복에 나선 손병희의 지령으로 진보회를 창립한 것이었다.1)

윤길병이 저술한 일진회취지서에 의하면, 일진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주권론을 전제한 위에서 君主를 입법·행정의 大權을 총람하는 '無上第一'의 위치에 설정하고, 人民은 이에 협찬하는 형태로 입법권에 간접적으로 參論할 수있다고 규정하였다. 황제권과 타협하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정치참여를 통한 민권신장을 바라는 독립협회 온건파 계열의 입헌군주제적 정체관을 계승한 것이었다. 또한 연설회 개최, 정부 대관과의 면담 요구 등 운동방식도독립협회 당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일진회의 목표가이러한 입헌군주제적 정체변혁운동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창립초기 활동에 舊독립협회 회원들이 참여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일 뿐이었다.

일진회 창립경위에 대해서는 趙恒來,《韓末社會團體史論考》(형설출판사, 1972), 40~46쪽 참조.

일진회의 친일행위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북한지방 진입을 후원하기위해 수송대를 조직하고 보급품을 운반하는 활동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러시아측 기밀을 정탐하기 위한 간첩활동에도 앞장섰으며, 경의철도 공사에서도 철도 工夫隊를 편성하여 공사의 속성에 일조하였다. 철도공사에 거의무보수로 봉사한 평안남북도·황해도 거주 일진회원이 연인원 149,114명이나참가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또한 1905년 11월 6일에는 '보호조약' 찬성 선언서를 발표하였고, 외교권은 한일의정서 체결과 고문협약으로 이미 일본에의존하고 있는 이상 새삼스럽게 외교권 박탈에 저항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주장했다.3)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 囑託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를 고문으로 맞이한 일진회는 그의 지도로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하였다. 우치다는 이토통감이 부임할 때 國政調査 촉탁으로 데리고 온 대륙낭인 계열의 인물이었다.4) 그는 1906년 10월 황제의 옥새도용사건에5) 연루된 李逸稙을 숨겨주었다가 투옥된 송병준을 구해주고 빈약한 일진회의 재정사정을 해결해주는 것을 빌미로 고문에 취임한 후6) 일진회의 매국적 친일활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실제로 우치다의 도움으로 석방된 송병준은 그 직후부터 공공연히 '日韓聯邦說'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황제폐위 문제에서도 일제보다도 앞장서서 과감

²⁾ 조항래, 위의 책, 114~119쪽.

 ⁵⁾ 戶叶薰雄・楢崎觀一、《朝鮮最近史 附韓國倂合誌》(蓬山堂, 1912), 19等.

⁴⁾ 內田良平은 청일전쟁 당시 天佑俠이라는 낭인조직를 이끌고 방한한 경험 등으로 인해 이토통감에게 발탁되었으며, 對外硬 운동론자인 스기야마 시게마루 (衫山茂丸)을 통해 일본 軍部를 대표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顯有朋)·가츠라 타로(桂太郎)·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등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趙恒來,〈內田良平의 韓國倂呑행적〉,《國史館論叢》3, 國史編纂委員會, 1989 참조).

⁵⁾ 옥새도용사건이란 고종황제가 李逸種이라는 인물에게 밀칙을 내려 23건의 한 국내 이권을 몇몇 일본인 政商들에게 양여하는 대신 그 상납급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로서, 사건이 일본정부측에 알려지자 이일직이 사적으로 옥새를 도용해서 일으킨 것으로 서둘러 무마한 사건이다(徐榮姬,《光武政權의 국정운영과 日帝의 국권침탈에 대한 대응》,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235~ 242쪽).

⁶⁾ 黑龍會編,《日韓合邦秘史》上(1930;原書房, 1966), 20~53\.

한 결행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고종이 황제권 보위를 위해 갖은 방법으로 저항하고 참정 박제순도 일진회와의 제휴를 거절하자 일진회는 1907년 5월 2일 박제순내각 탄핵문을 제출하고 총사직을 권고했다. 유약한 박제순내각의 경질을 결심한 이토통감은 차제에 보다 강력한 친일내각을 구성하기로 결심하고, 특히 폐위문제에 적극적인 이완용을 참정에 발탁함과 아울러 송병 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입각시킴으로써 일진회를 친일내각의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했다.7) 3품대신이라는 일반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송병준의 입각은 끊임없이 정계진출을 엿보던 일진회 세력에게는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되었으며, 이는 또한 그간의 친일활동에 대한 일본측의 보상이기도 하였다.

송병준은 내각에 들어가자 더욱 맹렬한 친일행위로 일본측 기대에 부응하였다. 특히 일제가 숙원사업으로 생각해온 고종의 폐위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1907년 7월초 헤이그밀사사건이 알려지자 송병준은 가장 앞장서서 고종의 폐위를 極諫하고 이를 관철해 내었다. 그러나 고종폐위와 신협약체결에 성공한 일제는 일진회에 대한 일반의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점차 일진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인 의병봉기가 이어지면서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일진회가 그러한 반일운동의 공격 목표가 되자 이용가치보다는 오히려 통감부 통치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애초에우치다 등도 일진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財團으로 만들어 산업활동에 종사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8) 이러한 일본측 의도를 전혀 간과하지 못한 일진회는 일제의 후원으로 언젠가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꿈을가지고 있었다. 일진회는 의병의 공격에 대항하여 自衛團을 결성하였으나,통감부측은 일진회가 국난극복을 빌미로 당세확장을 도모하며 양민에 대한폭행・협박・단발 강제 등을 일삼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취하기도 하였다.9)

이처럼 통감부측 태도가 돌변하자 내각내에서 송병준의 위치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참정 이완용은 통감부와의 밀착관계를 기반으로 권력을 독식하

⁷⁾ 조항래, 앞의 책, 114~200쪽.

^{8)《}日韓合邦秘史》上, 338~347쪽.

⁹⁾ 위의 책, 433쪽.

면서 송병준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송병준은 이토통감이 자신을 폐위문제에만 이용하고 권력은 이완용 쪽에 실어주는 것에 심히 분노하였다. 이완용과 송병준 등 일진회의 대립은 단지 권력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해 연합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즉 일진회가 구래의 양반 지배질서에 대한 철저한 해체를 지향한데 비해 이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일진회를 하층 무뢰배 출신이라 냉소하였고, 이에 통감부측 일본인들도 동조하면서 일진회측 불만이 고조된 것이었다. 날로 높아가는 회원들의 불만으로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할 수없다고 판단한 일진회 지도부는 이완용내각과 통감부를 상대로 한 특단의조치를 도모하게 되었다.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이완용의 권력 독식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의병의 공격으로 거의 궤멸 상태에 빠진 지방조직을 재건하는 등 난국 타개를 위해 송병준과 이용구·우치다 고문 등이 생각해낸 방법은 송병준의 사직이었다. 송병준이 사임함으로써 이완용내각을 불안에 빠뜨리고, 그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일진회에 등을 돌리고 합방문제에 소극적인 이토통감을 사직하게 한다는 발상이었다. 1908년 6월부터 시작된 송병준 사직 문제는 우치다 등 합방급진론자들이일본 軍部 강경파의 지원을 받아 벌이고 있던 이토통감 퇴진운동과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이토에게 설득당한 송병준이 사직 대신 內部 大臣으로의 전임을 택함으로써 무산되고 오히려 일진회 지도부 내에 갈등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10) 이토통감은 1909년초 순종황제를 데리고 남북한 순행길에 오르는 등 통감정치의 안정을 과시하고자 노력했으나, 그간 실시한 보호정치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일본내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결국 6월 14일자로 부통감 소네(晉爾荒助)에게 후임을 넘겨주었다.11)

이완용내각을 옹호하던 이토가 물러나자 1909년 9월부터 일진회는 다시

^{10)《}日韓合邦秘史》下,54~69\.

^{11)《}伊藤博文傳》下(春畝公追頌會, 1940), 800~841\.

한번 이완용내각 타도를 시도하였다. 일진회·대한협회·서북학회 등 재야 3 단체가 연합하여 이완용내각을 타도하고 나아가 새 정권 창출을 통해 숙원 사업인 합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한협회와 서북학회는 종래 반일적 성향을 유지해온 단체였지만 강한 권력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일단 이완용내각 타도, 새 정권 참여라는 목표 앞에서는 친일단체인 일진회와도 연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서북학회의 崔錫夏·鄭雲復 등은 매우 적극적으로 일진회측 공작에 협조하였다. 그 결과 9월 23일 3파합동 간친회가 열리고보다 확실한 盟約書 교환을 준비하는 등 자못 기세를 확장하였으나,12) 궁극적인 목표가 서로 다른 만큼 언제든지 붕괴될 소지가 있는 불안정한 제휴이기도 하였다.

결국 10월 26일 이토 암살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3파연합은 붕 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진회측이 합방을 더욱 서두르게 된 반면 대한협 회 등은 연합의 궁극적 목표가 합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완용내각도 합방의 공로를 일진회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일진회는 12월 3일 전격적으로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政見協定委員會를 소집하고 합방 성명서 발표 가부에 대한 의견를 물었다. 이에 대한협회가 반대함으로써 공 식적으로 3파연합은 결렬되었고, 일진회는 이날밤 즉시 在京 회원 200여 명 을 소집하여 총회를 열고 합방제의를 가결하였다. 일진회측은 대한협회와의 제휴가 결렬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각도 유생 30여 명과 보부상단체인 大韓 商務組合・漢城普信社 등의 유력자 300여 명을 동원하고, 정운복・최석하 등 을 통해 기독교계 중요 인물에 대한 설득도 병행하면서 12월 4일 아침 일찍 합방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황제와 내각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 를 전달하였다.¹³⁾ 이 上皇帝書·上韓國首相書·上韓國統監書 등은 10월초 일 본에 귀국했던 우치다가 이토를 만나 한국병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고무되 어 곧바로 山崎三郎・葛生修亮 등과 함께 기초한 문건으로서 나중에 能文家 인 武田範之・崔永年 등이 다듬은 것이었다. 송병준・이용구는 우치다 등이

^{12)《}日韓合邦秘史》下, 104~106쪽.

¹³⁾ 위의 책, 215~233쪽.

작성한 합방청원서에 대해 단지 완전한 합방으로 할 것인지, 日韓聯邦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을 뿐 청원서는 순전히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일진회는 다만 한국인 스스로 합방을 청원하였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이용당한 데 불과하였던 것이다.¹⁴⁾

그런데 합방청원서를 전달받은 이완용내각은 12월 7일 대신회의를 열고이를 각하하는 한편 대한협회·한성부민회·國是연설단·홍사단 등을 사주하여 국민대연설회를 개최하고 일진회의 합방청원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일진회는 재제출을 반복하였으나, 12월 9일 일본경찰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일진회장 이용구와 국민대연설회장 閔泳韶를 함께 불러 모든 집회 연설 및 선언서류의 반포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15)

그러나 여기서 이완용과 대한협회 등이 진실로 합방에 반대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한협회가 12월 4일 밤 결의한 합방반대 이유서에 의하면, "지금은 합방의 시기가 아니지만, 향후 한국이 開明 富强을 달성하여 일본의보호국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자연히 모든 한국인들이 합방을 주장할 것인데, 그때 합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인식일 뿐, 절대적인 합방반대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정부와 제휴하여 일진회에 반대하는 한편, 중추원관제를 개정하여 대한협회 회원들을 다수 議官에 임용하고, 각도에도 參事會를 개설하여 대한협회 회원들을 진출시킬 것을 계획하는 등16) 여전히 정권참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일진회와 연합하여 이완용내각을 타도하고 정권에 참여하려던 노선을 바꾸어, 다시 이완용내각과의 타협하에 정권참여를 실현해 보려는 전술적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일제는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대한협회나 일진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에 대해가차없는 해산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들의 간절한 정권참여 희망을 무참히 꺾어 버렸다.

¹⁴⁾ 위의 책, 152~159·197·217쪽.

¹⁵⁾ 위의 책, 284~287쪽.

^{16) 《}日韓外交資料集成》 8 保護及び倂合錄編, 317~318쪽.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한국에서 일진회의 합방청원서 제출은 사실 일본정부 지도자간에 한국병합 방침이 최종 결정된 후 그 단행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보호국화 이후 병합은 어차피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원래 일본 지도자들간에는 병합의 시기를 두고 다소 이견이 있었다. 이토(伊藤博文)·이노우에(井上馨) 등 文官들과 야마가타(山縣有朋)·가츠라(桂太郎)·테라우치(寺內正毅) 등으로 대표되는 軍部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는 征韓論 이래 뿌리깊은 문치파와 무단파의 대립이라는 전통과도 같은 맥락으로1) 통감부시기對韓政策의 기조뿐 아니라 그 궁극적 목표인 병합 실행의 문제에 대해서도영향을 미쳤다.

이토 히로부미 등 문치파들도 물론 한국병합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보다는 그 실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이토 등의 對韓政策은 문화정책·자치육성정책 등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2) 이토는 한국을 병합하기에는 아직 일본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법적으로 보호국 상태인 만큼 국제열강의 주시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이유를 들어서 한국병합에 대해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3) 실제로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막대한 전쟁비용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4) 그러므로 일본은 당시 한국의 병합을단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여력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뿐만아니라 국제정세의 경우에도 일본은 여전히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러시아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토 등의 신중론에도 타당한

¹⁾ 黑龍會編,《日韓合邦秘史》下(1930;原書房, 1966), 18쪽.

²⁾ 森山茂德, 《近代韓日關係史研究》(현음사, 1994), 201~240쪽 참조.

^{3)《}日韓合邦秘史》下, 109零.

⁴⁾ 信夫淸三郎 편,《日本外交史》1(每日新聞社, 1974), 220쪽.

이유가 있었다.5)

반면 합방급진론의 입장에 선 군부와 재야의 對外硬 운동론자들은 이토통감을 유약하다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결국 이토의 사직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설득에 의해 이토도 1909년 6월 통감직 사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병합 단행에 동의하게 되었다. 즉 4월 10일 총리대신 가츠라,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郎), 이토 3자간 회합에서 마침내 이토는 병합 단행에 이의가 없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6) 그 결과 이미 3월 30일자로 가츠라총리가 閣議에 제출해 놓은 〈韓國倂合에 관한 件〉이 7월 6일 결정되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단행하고,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충분히 實權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7) 일제의 한국병합 방침이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閣議에서 결정되고, 병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마련된〈韓國施設大綱〉에 의하면, 향후 준비할 항목으로 ① 한국 방어 및 질서유지를 담당할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가능한 다수의 헌병 및 경찰을 증파하여 충분히 질서를 유지할 것, ② 한국에 관한 외국과의 교섭사무를 파악할 것, ③ 한국 철도를 일본제국 철도원 관할로 이관하고 그 감독하에 남만주철도와 밀접한 연락을 가지게 해서 일본-대륙간 철도의 통일과 발전을 도모할 것, ④ 가능한 다수의 일본인을 한국내에 이식하여 일본 실력의根底를 깊이 함과 동시에 일한간 경제관계를 밀접히 할 것, ⑤ 한국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에 재임하는 일본인 관리의 권한을 확장해서 한층 민활한 통일적 행정을 기할 것8 등이 거론되었다. 병합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치안질서의 유지뿐 아니라 병합 이후 植民統治를 위한 준비, 나아가 일본 한 도 - 만주간 철도 연결까지 구상함으로써 한국병합을 교두보 삼아 대륙침략에 나설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⁵⁾ 이토가 열강의 태도에 대해 시종 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07년 11월 16 일 일본 閣議에 올린 의견서에서도 명백이 읽혀진다(日本外務省編,《日本外交 年表並主要文書》上, 1965, 對外政策に關する伊藤韓國統監意見書, 282~284쪽).

⁶⁾ 小松綠,《朝鮮倂合之裏面》(中外新論社, 1920), 8쪽.

^{7)《}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上,315\.

⁸⁾ 위의 책, 316쪽.

2) 병합조약의 체결

내부적으로 병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일제는 1910년 2월 해외 일본 공관에도 한국병합 방침 및 施設大綱을 통보하고, 3월에는 만주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제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4월 한국 병합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영국도 5월 병합을 승인하였다.》 그 간 병합단행을 지연시켜온 하나의 요인이었던 국제열강의 태도가 이렇게 해결되자 이제 병합은 행정적인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1910년 5월 30일 일제는 병합을 단행할 인물로 육군대신 테라우치를 한국통감에 겸임 발령하고, 6월 3일에는 閣議에서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과 總督의 권한 등에 대해 확정하였다. 그 방침에 따르면 병합 후 당분간은 일본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에 의해 통치하되 總督은 天皇에 직속하여 일체의政務를 통할하고, 또한 대권의 위임에 의해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일본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分離主義'원칙에 입각하여 식민지 총독에게 특수한 독자적 위상을 부여한다는 의미였다. 합병 실행에 필요한 경비는 일단 일본정부의 예비비로 지출하되, 향후 총독부 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총독부의 政費는 한국에서의 세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분간은 일정한 금액을 일본정부가 보충해주기로하였다. 병합에 따른 일본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통치행정 분야에서 정치기관은 최대한 간이하게 改廢하고, 통감부 및 한국정부에 재직하는 일본 관리 중 필요없는 자는 귀환 혹은 휴직시킴으로써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10)

마지막으로 병합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6월 24 일에는 경찰권 위탁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였고, 6월 30일자로 한국경찰을 폐 지하였다. 1907년 신협약 체결 이후 이미 한국의 치안경찰권은 일제가 완전 히 장악한 상태였지만, 보다 강력한 경찰력 확보를 위해 한국주차군 헌병대

⁹⁾ 森山茂德, 앞의 책, 268~269쪽.

^{10)《}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上,韓國に對する施政方針,336쪽.

산하에 통합시키기로 한 것이다.11)

이러한 모든 준비를 끝낸 신임 총독 테라우치는 7월 23일에야 한국에 착 임하였다. 착임 후에는 일단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일체의 정치적 집회나 연 설회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가차없이 검속 · 투옥하는 등 숨도 함부로 쉬지 못할 만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8월 16일 드디어 한국정부 의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병합을 위한 담판을 개시하였다.12) 테라우치가 병합조약안을 수교하자 이완용은 이에 대부분을 동의하면서도 국호를 朝鮮으로 개칭하는 문제와 황실 존칭문제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 였다. 現 황제를 병합 이후에 李太公이라 부르자는 일본측 제안에 이완용은 李王殿下라는 명칭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과 병합조약을 체결할 당사자로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황실 및 원로들의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제스처에 불과하였다. 일본측도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 이완용의 체면을 세워 줄 필요가 있었으므로 황실 칭호 부분만은 양보하였다. 그 결과 병합조약안 은 별다른 수정없이 8월 18일자로 한국정부의 내각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순종황제가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 명함으로써 같은 날 이완용과 테라우치통감 사이에 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었다.13)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이 양여를 수락하고 한국전부를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
-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后妃·後 裔에게 각기 지위에 상당한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보유하는데 충분한 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前條 이외에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 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

^{11)《}日韓外交資料集成》8,302~305쪽.

^{12)《}日韓合邦秘史》下, 678~682\.

^{13)《}日韓外交資料集成》8,330~333\.

할 것을 약속한다.

-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勳功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榮爵을 주고 恩金을 공여한다.
- 제6조 일본국정부는 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시정을 담임해 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히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 제7조 일본국정부는 성실 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관리에 등용한다.
-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얻어서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340쪽).

이상 8조로 이루어진 한일간 병합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 2천만 동포의 운명은 간단히 일본 제국주의자의 발길 앞에 내동댕이쳐졌다. 나라 전체를들어 남에게 맡긴 대신 얻은 것이라곤 극소수 황실가족들의 품위유지비와 몇몇 친일파 관리들에게 주어진 작위, 몇푼의 은사금이 전부였다. 나머지 무고한 일반 민중들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은총에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맡긴 채, 그것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본통치를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그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민지 백성의 처지로 전락하였다.

〈徐榮姬〉

찾 아 보 기

[7]

가계발급제도 家契發給制度 64,68 가권 家券 69 가사안 家舍案 81 가옥세 家屋稅 66,336 가츠라 타로 桂太郎 293,295 가토 마스오 加藤增雄 33 각부관제 各部官制 248 간도 유민 間島 流民 60 간선 幹線 278 감리 監理(control) 감리서 監理署 245 갑신정변 甲申政變 15,20 갑오개혁 甲午改革 49, 51, 52, 54 〈강령 급 세목〉 〈綱領及細目〉 228 강무형 姜懋馨 22 거납운동 拒納運動 337 거문도사건 巨文島事件 15 거문도점령 巨文島占領 171 건양 建陽 26 건원 建元 26 검사국 檢査局 55 결가제 結價制 132 결명 結名 75 결부 結負 70 결부제 結負制 71 결세연명부 結稅連名簿 331 결수연명부 結數連名簿 338 결호 結戶 75 결호전 結戶錢 138,154 경덕 慶德 26 경리국 經理局 57

경리원 經理院 330 경리회사 經理會社 경무고문 警務顧問 243 경무고문경찰 警務顧問警察 338 경무정리비 警務整理費 344 경상비 經常費 335 경성분대 鏡成分隊 291 경시청 警視廳 251 경운궁 慶運宮 13, 22 계금 契金 153 계자봉인 啓字封印 324 고광순 高光洵 285 고등관 高等官 268 고무라 주타로 小村壽太郎 193, 194, 214, 231, 295 고문관 顧問官 242 고문정치 顧問政治 228, 240 고영희 高永喜 고종 高宗 65, 86, 266 공동회사 共同會社 102 공립한성은행 公立漢城銀行 공법 公法 47,51 《공법회통》 《公法會通》 49 공사 公使 35 공수동맹 攻守同盟 273 공친왕 恭親王 37 〈관계발급사목〉 官契發給事目 81 관계발급사업 官契發給事業 79,84,86 관동도독부 關東都督府 272 관상소 觀象所 252 〈관세관관제〉 〈管稅官官制〉 247, 326, 327, 329, 337, 347 관제이정소 官制彛整所 309 관직의 분류 官職의 分類 261

관치행정 官治行政 246	군법제정 軍法制定 53
광무 光武 26	군부 軍部 56, 253
광무감독 礦務監督 133	〈군부관제〉 〈軍部官制〉 56,57
광무국 礦(鑛)務局 109,110	군부대신 軍部大臣 57
광무사검 光武査檢 93	군부예산 軍部豫算 54
광무양전 光武量田 93 광무학교 鑛務學校 110	군사경찰 軍事警察 289
광무학교 鑛務學校 110	군사비 軍事費 55
광무황제 光武皇帝 235, 238, 239	군사통수권 軍師統帥權 53
광세 鑛稅 336	군용지 軍用地 305,306
광통사 廣通社 99	군정권 軍政權 55
광학국 鑛學局 110	군정기관 軍政機關 56
교 教 48	군정의 실시 軍政의 實施 281
교안 敎案 175	군제의정소 軍制議定所 283
교전소 校典所 41~44	궁금령 宮禁令 242, 249
〈교전소의사규칙〉 〈校典所議事規則〉	
42	궁내부 조직 宮內府 組織 249
교정소 校正所 43	권달섭 權達燮 22
구교운동 仇敎運動 175	권업위원회 勸業委員會 105
구본신참 舊本新參 90	권재형 權在衡 44, 45
국가 國歌 31	권중현 權重顯 236, 238
국경치안 國境治安 60	균전론 均田論 62
국고은행 國庫銀行 319	그레이트하우스 Clarens R. Greathouse
국고증권 國庫證券 335	(具禮) 9,44
국민개병 國民皆兵 253	금고출납역 金庫出納役 319
국사 國社 31	금납화 金納化 102
국외중립 선언 國外中立 宣言 223	금본위제도 金本位制度 322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 303	
국자회사 麴子會社 106	기감 技監 252
국전제 國田制 76	기기국 機器局 105
〈국제〉 〈國制〉 45, 48	기로소 耆老所 152
국제공법 國際公法 49	기록국 記錄局 55
국직 國稷 31	기업공채 企業公債 335
국채보상기성회 國債報償期成會 327	기업자금 起業資金 325, 335, 341, 346
국채비 國債費 346	기자 箕子 30
국호 國號 19	기회균등주의 機會均等主義 232
군기 軍旗 31,55	길영수 吉永洙 225
군령권 軍令權 55	김가진 金嘉鎭 42
군령기관 軍令機關 56	김병시 金炳始 41
군무국 軍務局 55	김영수 金永壽 41
군법국 軍法局 57	김영준 金永準 44

김옥균 金玉均 20,21 김익승 金益昇 44 김중연 金重演 44 김중환 金重煥 42,78 김홍집 金弘集 272

[L]

나가모리 도키치로 長參藤吉郎 302 나남 羅南 286 나카하시 토무고로 中橋德五郎 299 남단 南壇 31 남만주철도 南滿洲鐵道 174 남선대토벌 南鮮大討伐 285 남정철 南廷哲 27 〈내각관제〉 〈內閣官制〉 내각제도(체제) 內閣制度(體制) 258, 260 내장원 內藏院 91,92 내장원경 內藏院卿 133 농공은행 農工銀行 325 농광회사 農鑛會社 111 농무국 農務局 67 **と**める부 農商工部 252

[=]

다카야마 코고로 高山小五郎 231 다키히라 코고로 高平小五郎 214 단군왕 Prince Tuan(端郡王) 175 당소의 唐紹儀 36 대관정 大觀亭 277 대군주폐하 大君主陛下 26 대록 代錄 74, 76, 77 대륙진출 大陸進出 297 대리공사 代理公使(Charge's d'Affaires) 35 대신관방 大臣官房 248 대심원 大審院 256 대원군 大院君 36

대의정부 代議政府 대・중장 보임 大・中將 補任 275 대포생산 大砲生産 대한 大韓 30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41, 46, 47, 48, 50, 51, 56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 大韓國內鐵道用達 會社 97 대한국대황제폐하 大韓國大皇帝陛下 대한기본경영방안 對韓基本經營方案 234 〈대한방침〉 〈對韓方針〉→〈제국의 대한 방침〉 대한상무조합 大韓商務組合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제국 의 대한시설강령〉 대한자강회 大韓自强會 303 대한제국 선포 大韓帝國 宣布 대한제국 통치조직 大韓帝國 統治組織 258 대한제국 헌법 大韓帝國 憲法 45, 48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대한협동우선회사 大韓協同郵船會社 100 대화정 大和町 277 대황제폐하 大皇帝陛下 36 대황후폐하 大皇后陛下 33 대흥회사 大興會社 98 덕수궁 德壽宮 22 데네트 Tyler Dennett 210 데레베유 Delevigue 224 데일리메일지 The Daily Mail 219 델까세 Theophile Delcassé 195 델꼬뉴 M. Delcoigne 218 도관찰사 道觀察使 246 도령 道令 255 도재판소 道裁判所 254 도적을 금압하는 방략 盜賊을 禁壓하는 方略 59

독립공원 獨立公園

18

독립관 獨立館 18 독립문 獨立門 18, 38 《독립신문》 《獨立新聞》 18, 24, 28, 30, 32, 38 독립협회 獨立協會 18, 38, 52, 55, 59 동도서기 東道西器 동만주철도 東滿洲鐵道 173, 180 동청철도 東淸鐵道 305, 314 동학당 東學黨 134 두락 斗落 70,80 등기부 登記簿 74

[2]

람스돌프 Vladimir V. N. Lamsdorff

178, 179, 193, 195 러불동맹 露佛同盟 169 러시아 露西亞 297 러시아식 군사교육 露西亞式 軍事教育 53 러일전쟁 露日戰爭 61 러한은행 露韓銀行 102 레사르 Paval M. Lessar 182 로바노프 Lobanov 17 로바노프-야마가타협정(약) Lobanov-山縣協定(約) 165, 175 로젠 Romanivich R. Rosen 17, 193, 214, 231 로젠-니시협약 Rosen-西協約 17, 165, 175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212. 215, 231 루트 Elihu Root 210 르젠드르 Charles W. LeGendre(李善 得) 41, 42, 44, 49

$[\Box]$

마루야마 시게도시 丸山重俊 235, 287, 289

마르텔 Martel 만국공법 萬國公法 16, 22, 29 만국공법체제 萬國公法體制 만민공동회 萬民共同會 52, 55 만삼회사 蔓藜會社 143 만주 滿洲 299 만주우선정책 滿洲于先政策 176 만한경영 滿韓經營 294 만한(이민)집중론 滿韓(移民)集中論 299 만한척식책 滿韓拓殖策 299 망자존대 妄自尊大 36 맥도날드 Claude MacDonald 177 맥레비 브라운 McLeavy Brown 218 맥켄지 Frederick McKenzie 219 메가타 타네타로 目賀田種太郎 227. $301, 318 \sim 320, 323, 325, 327, 328, 336,$ 338, 350 면장협의회 面長協議會 351 명례궁 明禮宮 22 명성황후 明星皇后 33 명치유신 明治維新 49 253 모병령 募兵令 모토노 이치로 本野一郎 195 묄렌도르프 P. G. Möllendorff(穆麟德) 103 무관학교 武官學校 52, 53 무단정치의 원형 武斷政治의 原型 288 무단폭압정치 武斷暴壓政治 264 문관전형고소 文官銓衡考所 253 미국무부 美國務府 36 미마시 三增久米吉 235 미상회사 米商會社 102 미쓰이은행 三井銀行 295 민병석 閔丙奭 민영기 閔泳綺 133, 238 민영철 閔泳喆 223 민영환 閔泳煥 133

민종묵 閔種默

133

[日]

42

박용규 朴鎔圭

브라운 J. M. Brown(柏卓安) 9, 95, 136, 141, 338

[시

박용대 朴容大 44 27, 65, 66 박정양 朴定陽 사관학도 士官學徒 54 박제순 朴齊純 235, 237, 238, 266, 291 사금개채조례 砂金開採條例 109 박제순내각 朴齊純內閣 241 사대조공 事大朝貢 14, 30 발데르제 Alfred von Waldersee 177 사령관 司令官 274 〈사법권 및 감옥사무위탁의 조약(각서)〉 발틱함대 Baltic艦隊 202 발해 渤海 15 〈司法權 및 監獄事務委託의 條約(覺 257, 310 방전법 方田法 書)〉 62 〈방전조례〉 〈方田條例〉 64 사법제도 司法制度 256, 310 배원친명책 背元親明策 27 사상회사 士商會社 106 백동화 白銅貨 135, 141, 320~322, 331 사세국 司稅局 67 법규교정소 法規校正所 사호 Shaho 199 $44 \sim 46$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법규류편》 《法規類編》 43 314, 315 사회진화론 Social Darwinism 211 법부 法部 252 법부관제 法部官制 310 삼광정책 三光政策 284 3국간섭 3國干涉 172, 173, 185, 187, 법화 法貨 319, 321 199, 200 베를린회의 Berlin會議 171, 205 베조브라조프 A. M. Bezobrazoff 삼림법 森林法 303 182 벨기에 Belgium 33 삼정감독 蔘政監督 133 삼정사 蔘政社 141 별기군 別技軍 282 별무가 別貿價 158 삼한 三韓 30 병참군의부 兵站軍醫部 상무사 商務社 93 280 병참병마장 兵站病馬場 280 서북철도국 西北鐵道局 96 병참수의부 兵站獸醫部 서재필 徐載弼 42 280 병합 倂合 239 서정순 徐正淳 44 서태후 西太后 보불전쟁 普佛戰爭 176 199 보호국 保護國 323 설점수세제 設店收稅制 109 239 성기운 成岐運 보호화 保護化 44 세관설비공사비 稅關設備工事費 복원령 復員令 279 347 본청비 本廳費 346 〈세목〉 〈細目〉 226, 229 봉천(대)회전 奉天(大)會戰 199, 204 세원개발계획 稅源開發計劃 314 부・군 府・郡 245, 255 세입예산 歲入豫算 135, 136, 335, 337 부동산법조사회 不動産法調査會 302 세출예산 歲出豫算 139, 148, 151, 152, 부하철도회사 釜下鐵道會社 338, 341, 342 96 북경의 55일 北京의 55日 소미아라 노스케 曾彌荒之助 257 177 분록 分錄 소중화 小中華 74 15, 38

송병준 宋秉畯 256, 286 아편전쟁 阿片戰爭 172 송수만 宋秀萬 302 아프간전쟁 Afkan戰爭 171 송원섭 宋遠燮 70 안련 安連→알렌 송은성 宋殷成 62 안봉선 安奉線 277 수도공사비 水道工事費 안종덕 安鍾悳 344 78 수비관구 守備管區 안중근 安重根 269 수산시험소 水産試驗所 105 알렉세예프 Kir Alexeiev 수옥헌 漱玉軒 236 알렌 Horace N. Allen(安連) 스티븐스 Durham W. Stevens 야나기하라 사키미츠 柳原前光 208, 296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 227 189, 스페이에르 Alexis de Speyer 264, 297 34 시노모세키조약 下關條約 야초 野草 16, 173 72 시베리아(횡단)철도 Siberia(橫斷)鐵道 양무감리 量務監理 70 173, 196 양무위원 量務委員 70 시위대 侍衛隊 58,60,253 양안 量案 시작 時作 70.75 양전척 量田尺 시정개선 施政改善 양조시험소 釀造試驗所 308 332 시종무관장 侍從武官長 양지국 量地局 253 양지아문 量地衙門 67,71,84 시주 時主 $70,75 \sim 77,81,88$ 식산흥업정책 殖産興業政策 89 어기 御旗 31 신사유람단 紳士遊覽團 어업권 漁業權 271 304, 314 신삼세 新三稅 313, 332, 336, 350 어업법 漁業法 304 엄정중립 嚴正中立 신상회사 紳商會社 106 201, 202 신세 新稅 → 신삼세 여순협정 旅順協定 180 〈신식화폐발행장정〉 〈新式貨幣發行章 역도세 驛賭稅 336 程〉 102 역둔토 驛屯土 140, 158 신응희 申應熙 272 연강세 沿江稅 92 연초세 煙草稅 신재영 申載永 44 336 심상훈 沈相薰 염업시험장 鹽業試驗場 66, 133, 235 332 심순택 沈舜澤 26 영선비 營繕費 347 심의승 沈宜承 22 영은문 迎恩門 18 13도・1목・3부・364군 13道・1牧・3府 영일동맹 英日同盟 168, 169, 230, 232, · 364郡 245 239 영학당 英學黨 52 [0] 오기하라 萩原守一 오도리 가이스케 大鳥圭介 20,95 아관파천 俄館播遷 18, 33, 34, 258 오적 五賊 238 아산군 牙山郡 70 오쿠마 시게노부 大隈重信 33 아카이시 겐지로 明石元二郎 왕비전하 王妃殿下 26 269, 290 왕세자저하 王世子低下 26

왕태자전하 王太子殿下 26	이기 李沂 64, 76, 302
왕후폐하 王后陛下 26	이노우에 카오루 井上馨 225,325
외교고문 外交顧問 227	이도재 李道宰 65
외지통치 外地統治 265	이사관 理事官(Resident) 234, 237
외획 外劃 137~139,147	이사청 理事廳 247,254
용병권 用兵權 273	이사청지청 理事廳支廳 254
용빙 傭聘 249	이수병 李秀丙 27 이완용 李完用 235, 238
우메 겐지로 梅謙次郎 303	이완용 李完用 235, 238
우치다 료헤이 內田良平 385	이완용친일내각 李完用親日內閣 241
원세개 袁世凱 36	이용익 李容翊 91, 141, 147, 159, 160,
원수부 元帥府 54~57, 283	224, 225
〈원수부규칙〉 〈元帥府規則〉 47,55	이용태 李容泰 272
원시취득 原始取得 78,88	이윤용 李允用 44
위테 Sergei J. Witte 179, 214	이은 李垠 257
유기환 兪箕煥 66	이이제이 以夷制夷 18
유길준 兪吉濬 63,272	이재순 李載純 44
유원성 柳遠聲 44	이종건 李種健 44
유인석 柳鱗錫 23	이종대 李種大 70
유진억 兪鎭億 64	이지용 李址鎔 223, 225, 236, 238, 273
유인석 柳麟錫 23 유진억 俞鎭億 64 유혁로 柳赫魯 272	이종대 李種大 70 이지용 李址鎔 223, 225, 236, 238, 273 이채연 李采淵 42
육군법원 陸軍法院 58	이최영 李最榮 22
육군사관학교 陸軍士官學校 54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9,193,
윤용선 尹用善 46	235, 238, 240, 301, 323, 350
윤치호 尹致昊 23,227	이하영 李夏榮 238, 279
을미사변 乙未事變 17, 20, 165	이한규 李學均 994 995
을사보호조약 乙巳保護條約 266,323	이한응 李漢應 219, 220
을사오적 乙巳五賊 236	이홍장 李鴻章 37,174
의무국 醫務局 57	이홍장-로바노프조약 李鴻章-Lobanov
〈의정부관제〉 〈議政府官制〉 309	條約 174
의화단 義和團 60	인쇄국 印刷局 105
의화단사건 義和團事件 175, 180, 196	인지수입 印紙收入 337
의회 議會 48	인천신상회사 仁川紳商會社 92
이강계 李康季 285	일경 日耕 80
이강년 李康季 285	일람불어음 一覽拂於音 103
이교혁 李喬赫 70	〈일로강화조약에 관한 외상 의견서〉
이권 利權 295	〈日露講和條約애 關한 外相 意見書〉
이권탈취 利權奪取 294	295
이규완 李圭完 272	일시대부금 一時貸付金 329
이근명 李根命 44	일시사금 一時賜金 250
이근택 李根澤 223, 236, 238	일진회 一進會 235, 269

임상준 任商準 22 임시비 臨時費 335 임오군관 壬午軍亂 15 입안 立案 69 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50

[ㅈ]

자문위원회 諮問委員會 49 자유도한 自由渡韓 299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Korea's Fight for Freedom 219 작부부 作伕簿 331 장석주 張錫周 272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 95 장지연 張志淵 24 장홍식 張鴻植 44 〈재무감독국관제〉 〈財務監督局官制〉 329, 337, 347 〈재무서관제〉 〈財務署官制〉 329 재무행정 財務行政 261 재정고문 財政顧問 227.312 재정고문부 財政顧問部 327,329 재판권 裁判權 310 재판소 裁判所 256, 310 재판소구성법 裁判所構成法 310 〈재한주차 각부대요원 정리의 건〉 〈在 韓駐箚各部隊要員整理의件〉 288 전고규정 銓考規程 247 전답관계 田畓官契 77, 83 전답도형도 田畓圖形圖 72 전보총사 電報總司 279 전신선 電信線 278 전의 典醫 249 〈전제망언〉 〈田制妄言〉 전지문권도식 田地文券圖式 63 전통도 田統圖 63 전환국 典園局 92, 105 전환국장 典圜局長 133 〈전후경영의견서〉 〈戰後經營意見書〉

297 절대군주제적 정치체제 絶對君主制的 政 治體制 50 정교 鄭喬 22, 24 정도영 鄭道永 70 정동구락부 貞洞俱樂部 42 정미7조약 丁未七條約 289 정범조 鄭範朝 정서책 양안 正書冊 量案 정우회 政友會 272 《제국신문》《帝國新聞》 218 〈제국의 국방방침〉 〈帝國의 國防方針〉 295, 297 〈제국의 대한방침〉 〈帝國의 對韓方針〉 226, 229, 294 〈제국의 대한시설강령〉 〈帝國의 對韓施 設綱領〉 226, 227, 294, 295, 297, 298, 301, 316 제국주의적 침략정책 帝國主義的 侵略 政策 239 제실재산정리국 帝室財産整理局 248 제십팔은행 第十八銀行 101 제오십팔은행 第五十八銀行 101 제일은행 第一銀行 97, 160, 320, 321, 339 제일은행권 第一銀行券 101, 301, 319 제지국 製紙局 105 조문 趙汶 62 조병세 趙秉世 27, 41 조병호 趙秉鎬 44 조선실업시찰단 朝鮮實業視察團 311 조선실업시찰단 조사복명서 朝鮮實業視 察團 調査復命書 311 〈조세징수규정〉 〈租稅徵收規定〉 326 조인환 曺仁煥 285 조오수호통상조약 朝墺修好通商條約 20 조희연 趙義淵 272 존화양이 尊華攘夷 23

죠단 John N. Jordan 35, 202, 208

주병권 駐兵權 273 징세제도 徵稅制度 350 주상전하 主上殿下 26 주석면 朱錫晃 52, 53 [ㅊ] 주세 酒稅 336 주임관 奏任官 253, 261 차관정치 次官政治 248 주차관 駐箚官 229 차도선 車道善 285 주차군 駐箚軍 277 착취식민지 搾取植民地 300 주차헌병 駐箚憲兵 276 참여관 參與官 247 주차헌병조직 駐箚憲兵組織 책봉체제 册封體制 14, 37 291 중앙군 中央軍 척사위정 斥邪衛正 58,60 38 〈중앙은행조례〉 〈中央銀行條例〉 103 척왜양창의 斥倭洋倡義 38 중앙행정편제 中央行政編制 258 천황 天皇 33 중초책 양안 中草冊 量案 73 철도 鐵道 305 중추부 中樞府 243 철도망 鐵道網 298 중추원 中樞院 243 철도사 鐵道司 95 증수정책 增收政策 336 청일전쟁 淸日戰爭 17.36 지계감독 地契監督 총상동 總商董 80 37 지계감리 地契監理 총세무사 總稅務司 99,136,141,251, 80 지계아문 地契衙門 $78,80 \sim 82,84,86,$ 336 88 최문현 崔文鉉 44 지계양안 地契量案 77 최의성 崔義成 83 지권 地券 최익현 崔益鉉 23 69,84 지도 指導 232 최홍준 崔鴻俊 44 〈지방관관제〉 〈地方官官制〉 326 치도국 治道局 250 지방군 地方軍 58 치도비 治道費 344 지방대 地方隊 58~60 칙임관 勅任官 253, 261 지방비 地方費 255 친왕기 親王旗 31 지방위원회 地方委員會 친위대 親衛隊 58,60 지방행정관서 地方行政官署 친일세력의 양성 親日勢力의 養成 282 260 지방행정구역 地方行政區域 245 친일파 親日派 271, 272 지상권 地上權 66 친임관 親任官 261 지세 地稅 $136 \sim 139,336$ 칭제건원 稱帝建元 13 지적도 地籍圖 63 지적도제 地籍圖制 72 [7] 〈지제의〉 〈地制議〉 지조법 地租法 쿠로니 栗野愼一郎 62 193 쿠로파트킨 Alexei N. Kuropatkin 지질국 地質局 109 진보당 進步黨 272 178, 179, 182 $52,58\sim60,283$ 크롬 Krumm(巨廉) 67 진위대 鎭衛隊 〈집회취체령〉 〈集會取締令〉 286

[≡]

탁지부 度支部 133, 155, 250, 326, 330 〈탁지부관제〉 〈度支部官制〉 332 태사 太社 31 태직 太稷 31 태프트-가츠라조약(밀약·비밀각서) Taft-桂條約(密約・秘密覺書) 206, 209, 230, 231, 239 태형 笞刑 256 태환금권 兌換金券 103 〈태환금권조례〉〈兌換金券條例〉 103 터키 Turkey 33 테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269 67 토목국 土木局 토지가옥설명규칙 土地家屋說明規則 303 토지조사국 土地調査局 331 **도** スペート 土地調査簿 73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314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 〈土地測量 에 關한 請議書〉 64 통감 統監 234, 237, 240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統監府及理 事廳官制〉 309 〈통감부재정감사청관제〉 〈統監府財政監 査廳官制〉 326 통리교섭농상사무아문 統理交渉通商事務 衙門 140 통상세 通商稅 92 통신원 通信院 통치조직 統治組織 260

[亚]

파블로프 A. I. Pavlov 182, 224 판임관 判任官 261 판임문관 判任文官 253 판적국 版籍局 67

편제 編制 243 평균분작 平均分作 63 평리원 平理院 138 평식원 平式院 105 포공국 砲工局 57 포대영 砲隊營 55 포사세 包肆稅 92 플랑시 V. Collin de Plancy(葛林德) 34 피의 일요일 학살 血의 日曜日 虐殺 204

[ㅎ]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 304 하야시 곤스케 林權助 208, 223, 225, 227, 235, 273, 301 학부 學部 252 《한국의 비극》 The Tragedy of Korea 219 한국주차일본군 韓國駐箚日本軍 한국황무지개척안 韓國荒蕪地開拓案 《한국회보》《韓國彙報》 30, 31 한규설 韓圭卨 238 한만교환 韓滿交換 189, 193, 195, 205 한미전기회사 韓美電氣會社 101 《한성순보》《漢城旬報》 62 한성은행 漢城銀行 102 한영복 韓永福 44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韓日外國人 顧問傭聘(僱聘)에 關한 協定書〉 227, 229, 301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208, 223, 225, 229, 240 한일협약 韓日協約 240, 242 〈한일협약실행각서〉〈韓日協約實行覺書〉 310 한전론 限田論 62

102

321, 322

103

36

335

한진창 韓鎭昌 홍재하 洪在夏 44 44 한청통상조약 韓淸通商條約 37 홍종우 洪鍾宇 21, 43 항세 港稅 136, 336, 338 홍콩-상하이은행 香港上海銀行 허부 虛簿 77 화란 和蘭 33 허위 許蔿 화약국 火藥局 302 105 화이관 華夷觀 헌병경찰기구 憲兵警察機構 292 14, 38 헌병보조원 憲兵補助員 290 화이체제 華夷體制 171 헌병보조원비 憲兵補助員費 347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 헌병좌관 憲兵佐官 292 화폐정리자금 貨幣整理資金 헐버트 H. B. Hulbert 화폐제도 貨幣制度 238 321 헤이그밀사사건 海牙密使事件 328, 〈화폐조례〉 〈貨幣條例〉 350 환구단 圜丘壇 26, 27, 28, 29 환구제 圜丘祭 현상건 玄尙健 224, 225 27 협동기선회사 協同汽船會社 99 활빈당 活貧黨 52, 59 호구조사 戶口調査 137, 154, 330, 338, 황단 皇壇 28 350 황명 皇明 호리모도 掘本禮造 282 황제국 皇帝國 호명 戶名 황제즉위 皇帝卽位 19 77 호세 戶稅 $136 \sim 139, 330, 336, 350$ 황태자 皇太子 56 호위대 扈衛隊 55, 58 회계국 會計局 55 홍범도 洪範圖 285 《회계책》 《會計冊》 144, 147, 160 〈홍범14조〉 〈洪範14條〉 49, 50 흥업은행 興業銀行 325 홍삼전매사업 紅蔘轉賣事業 141, 147, 희랍 希臘 33 159, 330, 347 힐리어 Walter C. Hillier

집 필 자

개	요 윤병석
	I. 대한제국의 성립
	2. 7.2 7.7 0.6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이민원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이민원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이민원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1	레틸레크시 /크레도 크리코드 크리코
	대한제국의 〈국제〉 및 군사제도조재곤
	광무양전·지계사업왕현종
	산업진흥정책 오두환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변승웅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이윤상
	Ⅲ. 러일전쟁
1	기시키게시 제거 그에서
	러일전쟁의 배경구대열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구대열
	Ⅳ. 일제의 국권침탈
1.	국권의 제약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김운태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권태억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이윤상
V. 대한제국의 종말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서영희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서영희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서영희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서영희

한 국 사

42

대한제국

1999년 12월 20일 1999년 12월 27일	<u> </u>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판매처	전화 02-3785-2213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값 6,300 원